
|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 III. 조선시대 官의 기와 생산과 瓦匠
 - IV. 조선시대 私窯의 기와 생산과 瓦匠
 - V. 맺음말
-

| 요약

고려시대 官需用 기와는 중앙의 경우 개경 인근의 관요인 六窯과 지방의 瓦所에서 생산한 기와로 충당하였다. 지방의 관수용 기와는 공사 현장에 瓦匠을 부역 동원하여 구운 기와로 조달하였는데, 중앙에서도 필요시 瓦匠을 현장에 동원하여 기와를 만들어 썼다. 14세기에는 瓦匠을 품삯으로 고용하여 기와를 굽게 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불교 사원 중에는 기와 제조술을 지닌 瓦匠僧을 보유하고 기와를 자체 조달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런 와장승 중에는 연안 해로를 활용하며 인접한 複數 군현 범위의 광역 수요를 대상으로 기와를 생산·공급하는 이들도 확인된다. 수도 개경은 민간 瓦匠의 私的 생산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개경 瓦匠 중에는 멀리 전라도 지역까지 초빙되어 가서 기와를 구운 사람도 있었다. 또 14세기에는 중앙 관서의 건축공사에서 瓦匠의 私窯 기와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들도 등장한다. 지방의 민간 瓦匠 중에도 근거지 인근의 複數 군현을 포함한 범위에서 사찰, 주거지, 성곽 등의 공사에서 기와를 굽거나, 주문에 따라 기와를 만들어 공급하는 등 광역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중앙의 관수용 기와는 瓦署에서 생산하였으나, 부족할 경우 민간 瓦匠들을 공사 현장에 부역 동원하여 기와를 굽게도 하였다. 과중한 역 부담과 낮은 처우, 代立價를 노린 瓦署 노비들의 압박 등은 瓦署 瓦匠들에게는 벗어나야 할 질곡이었다. 정부는 한편으로, 한양의 평민층에게 저렴한 기와를 공급하기 위해 別瓦窯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정작 평민층의 기와 구매가 부진하고, 연료목 운송과 관련한 민폐, 양반층 대상 불법 판매 등이 지적되면서 폐지와 복설을 반복하였고, 마침내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각종 官 役事에서는 瓦匠을 부역 징발하여 현장에서 기와를 구워 공급하게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들 瓦匠에게 식사 이외에 일종의 工賃까지 지급하였다. 공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瓦匠들은 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항의하였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가 정당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였다. 17세기 이래 소속 瓦匠 부족으로 瓦署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瓦匠의 私窯 기와를 官이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18세기에는 정부가 기와값을 瓦匠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것으로 기와를 구워 납품하도록 하였다. 私窯 기와를 구입해서 관수용으로 쓰는 이같은 방식은 지방의 경우 16세기 후반부터 보인다. 민간 瓦匠의 私窯 활동은 완제품 기와의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 현장이나 그 인근에서 기와를 직접 구워 공급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건축주의 초빙을 받은 瓦匠은 지역 사회에서 정평이 있는 瓦匠들이었는데, 대부분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겸하였다. 이들은 건축주와 비용 및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공사 현장 인근에서 瓦幕을 설치하고 기와를 구워 공사에 공급하였다. 19세기 초반 경상도 선산에서 건축주가 瓦匠에게 踏泥牛를 구입해 준 사례로 볼 때, 향촌 瓦匠의 작업 과정에도 답니우를 사용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만은 않았을 것이 짐작된다. 역시 19세기 초반 경상도 선산에서 瓦匠은 가마에 불을 지펴 꼬박 3일 동안 기와를 구웠다. 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의 수량은, 16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와장의 경우, 가마 1기당 평균 3천 장을 조금 상회하였다. 가장 널리 사용된 땔감은 소나무였는데, 비용 부담이 매우 컸다. 건축주가 瓦匠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땔감과 잡역부, 답니우 등 고비용 생산 요소들이 투여되는 방식과 얽혀 있어서, 그 표준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육요(六窯), 와소(瓦所), 와장(瓦匠), 와서(瓦署), 별와요(別瓦窯), 공임(工賃), 답니우(踏泥牛)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서성호*

I. 머리말

전근대 시기 기와는, 궁궐전각과 관아 청사 등 국가권력이 상용하는 건물이나, 불교·도교 사원과 공립 교육기관 등 종교·이념 시설, 그리고 지배 신분층 중심의 극소수 개인의 가옥에 사용된 계층성 짙은 건축 부재였다. 그런 만큼 기와의 생산과 수요의 실상은 국가의 통치방식이나, 지식문화의 재생산 구조, 財貨의 사회적 분배 양식 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와 생산의 틀에 대한 이해는 곧 당해 사회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기본 인식의 바탕 위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의 큰 틀에 대해 생산 주체로서의 瓦匠과 기와 수요처를 축으로 하여 그 대강과 추이를 개관할 것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공히 기와 생산에 관련된 문헌 기록 자체는 매우 드물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자료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고려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문헌 기록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조선시대에도 기와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는 극히 빈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와 생산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선학들의 연구가 있었다. 특히 조선전기 公私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 운영한 瓦署 및 別瓦窯에 대한 검토는¹⁾ 그 대표적인 업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아울러 고려~조선 전기의 기와 생산체제와 瓦匠, 연료목 등의 생산 요소, 기와의 재활용과 운송 등을 통해 기와의 조달 양상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근래의 성과도²⁾ 많은 도움을 준다.

이 글은 그러한 선행 연구들의 바탕 위에서, 고려~조선시대의 기와 생산과 瓦匠에 관한 개관을 시도한

*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yaho109@hanmail.net

본 논문은 한국기와학회·국립제주박물관 『제주기와의 제 양상』 학술대회(2020년 11월 6일, 국립제주박물관) 발표자료집에 수록된 '기조강연'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을 보완한 것이다.

1) 姜萬吉, 1967, 「別瓦窯考 -朝鮮時代の製瓦業發展」, 『史學志』 1, 檀國大學校 史學會(姜萬吉, 1984, 「民需用 製瓦場, 別瓦窯」,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所收). 본 논문 III장 1절의 서술은 바로 이 연구에 크게 힘입었다.

2) 鄭治泳, 2006, 「高麗~朝鮮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2, 서울경기고고학회.

것이다. 그 동안 고고학계의 기와 생산 유적 발굴과 그 분석 연구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충실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기와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생산의 전체적인 틀과 瓦匠의 활동에 대해 정리한 연구는 드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작성된 것으로, 기존에 기와의 생산과 瓦匠에 관련하여 활용돼 온 자료들을 재삼 검토하는 한편, 그 동안 소개되지 않았거나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일부 자료들을 찾아,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기와에 대한公私 수요에 부응한 기와 생산의 여러 범주, 그리고 그 속에서 생산의 직접적 주체로 기능한 瓦匠에 대해 그 대강과 추이를 개관하려고 한다.

근래에 고고학계에서 유적 출토 瓦片 자체의 형태적 특징과 가마 구조 및 그 시기별 추이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 중에는 그러한 고고학적 분석을 토대로 기와 생산에 대한 기존 역사학쪽 성과와의 접점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³⁾. 또 다른 한편으로, 역사학계에서도 중세고고학의 발굴 성과들을 면밀히 살피고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간의 많은 발굴 유적에서 수습된 다양한 銘文 와편들의 출토 현황과 그 내용,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해 상세하게 정리한 연구는⁴⁾ 그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러한 학제간 상호 작용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그간에 축적돼 온 고고학 발굴 성과들을 소화할 만한 식견이 부재한 데다, 아직은 그러한 성과들을 원용하여 고려~조선 시대 기와의 생산체제와 그 주체로서의 瓦匠이라는 큰 틀을 연역해 내기에는 두 학문간 연구 형태의 간극이 없지 않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다. 이에 따라 기와 수요처와 그 생산 주체로서의 瓦匠이란 논점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명문 와편들의 활용으로 고고학 발굴 성과의 활용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諸賢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II. 고려시대 기와 생산과 瓦匠

1. 六窯와 瓦所

고려시대에도 기와의 수요는 궁궐전각, 관아 청사, 성곽 부속 건물, 그리고 불교 사원과 극소수 지배층의 가옥에 집중되었다. 다만 풍수도참설에 따른 西京·南京 건설과 고려 중·후기의 잦은 이궁·별궁의 造

3) 경남 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瓦窯의 형태·구조와 그 추이를 분석하고, 고려시대 수공업 所체제의 일환인 瓦所에 대한 이해와 접목을 시도한 최근 연구(김성진, 2020, 「경남지역 고려 와요(瓦窯)의 성립과 변천」, 『한국중세고고학』 7, 韓國中世考古學會)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4) 홍영의, 2015,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한국중세사학회; 홍영의, 2018,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명문기와 현황과 과제」, 『한국중세고고학』 4, 한국중세고고학회.

成,⁵⁾ 고려 말의 한양 천도 추진에다, 역대 왕실의 잦은 사원 창건⁶⁾, 거란과의 전쟁, 이자겸의 반란, 몽골과의 전쟁과 같은 심각한 내우외환 이후의 궁궐전각의 수리·신축 등으로, 기와의 수요는 전 시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국가는 그런 기와 수요에 대해 개경 인근의 官窯와 지방의 瓦所를 통해 상시 대처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 役事 현장에서 직접 기와를 구워 조달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가통치 기구에서 기와 조달과 관련한 직제로는 성종 대 김은부가 역임한 甄官丞이 보인다⁷⁾. 따라서 漢代 이래 중국 역대 왕조의 陶瓦 관련 관서이던 甄官署가 고려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⁸⁾, 이후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將作監에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⁹⁾. 고려 중앙의 官窯와 직결되는 직제는 『고려사』 식화지 權務官祿條(이하 권무관록조) ‘문종 30년’항과 ‘인종朝’항에 각각 보이는 諸窯直과 六窯直이다. 양자는 공히 8석 10두 권무관록의 대상이고, 같이 열거된 타관서 직임들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관직의 명칭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¹⁰⁾. 즉 제요가 인종대 이전에 육요로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제요 또는 육요는 문헌과 묘지명, 그리고 만월대 출토 와편의 명문 등에 보이는 여러 ‘窯’들이 거의 확실하다. 기존의 『고려사』와 <박화묘지명>에 전하던 南山窯, 溟江窯, 月蓋窯¹¹⁾, 板積窯,¹²⁾ 1973년 북한측 조사에서 발견되었다는 와편의 명문 ‘월개(월포)’, ‘지포’, ‘적항’, ‘판적’, ‘남산’, 2007년 만월대에 대한 남북한 공동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와편의 명문 ‘月蓋’, ‘赤項’, ‘板積’, ‘德水’¹³⁾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7(8)개 요여서 ‘육요’와는 차이가 있으나, 북한측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와편 명문은 실물 제시가 없었고, 그 중 ‘월포’나 ‘지포’는 이후의 발굴조사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 ‘월포’나 ‘지포’가 실존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폐요되거나 인접한 복수의 요장을 통합 관리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로서는, 『고려사』 권무관

5) 기록상으로는 會慶殿을 중심으로 한 만월대 正宮과, 수창궁을 비롯한 城內 76개의 이궁·별궁 등 모두 106개 가량의 궁궐 이름이 전한다. 고려시대 궁궐 조영에 대해서는, 홍영의,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참조.

6) 태조가 <훈요십조>에서 부처의 보살품을 강조하고 개경에 법왕사를 비롯한 10개의 大刹을 창건한 이래 역대 왕들이 사찰을 건설하였다. 문종이 지은 흥왕사는 규모가 무려 2,800칸에 이르렀다. 고려 왕실이 불교를 앞장서 높이면서 수도 개경에는 수많은 사찰이 건설되었는데, 고려가 망한 지 한참 뒤인 16세기의 文人 車天輅는 개성 성내에 유명한 사찰만 3백 개에 달한다고 하였다(『대동야승』, <五山說林草叢> 「高麗王氏 事佛甚謹 城中名刹三百」). 고려시대 개경의 사찰에 대해서는, 박종진, 2000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7) 『고려사』 권94, 김은부傳.

8) 서성호, 1997,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2쪽.

9)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7, 고려사학회, 75쪽.

10) 서성호, 1997, 앞의 논문, 22~23쪽 주83. 홍희유는 제요가 개경 인접 중앙직속요이거나, 瓦所를 관리하는 관청이고, 육요는 중요한 도자기 생산지이거나 일부 자기요를 관장하는 기관이라 했는데[홍희유, 1979,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9, 지양사), 89~90쪽],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諸窯’와 ‘六窯’는 ‘○요’라는 명칭 형식에서 ‘諸’(여럿)와 ‘六’(여섯)만 달리 한 것으로, 이를 두고 하나는 기와, 다른 하나는 자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어색하다.

11) 『고려사』 권53, 지7, 五行1, 水, 예종 9년 4월 乙丑 「大雨雹, 震文德殿東廊柱, 及南山·溟江·月蓋窯等處樹木」.

12) <朴華墓誌銘> 「至元十五年 由典理司書員 任全州臨陂縣尉 罷秩 入內侍 積年勞 歷板積窯直供驛司 曆署司 令紫雲坊判官至大三年 拜司憲科正」.

13) 홍희유, 앞의 책, 90쪽; 홍영의, 2012,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I』, 국립문화재연구소, 318쪽.

록조 문종 30년의 ‘제요’가 정리되어 同 인종조의 ‘육요’로 되고, 위의 여러 요장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제요’ 또는 ‘육요’는 개경 인근에 위치하면서¹⁴⁾ 궁궐전각 중심의 官 수요에 부응한 官窯로 판단된다¹⁵⁾. 관요의 기능은 특히 왕실의 거처와 직결된 부분이 있으므로, 개경 환도 후부터 바로 복구하려고 했던 것 같다. 환도 후 15년 가량 지난 1285년(충렬왕 11) 무렵 內侍 朴華(1252~1336)가 판적요 책임자(板積窯直)로 부임한 사실은¹⁶⁾ 몽골과의 전쟁 동안 붕괴된 관요의 생산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관요인 육요 외에 瓦所 역시 官需用 기와의 조달을 책임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驪州牧 古跡 登神莊條(이하, 등신장조)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금·은·동·철·絲·紬, 종이, 기와, 숯, 소금, 먹, 미역, 자기, 어물, 생강 등 특정 광물이나 수공업품, 농수산물 등을 공납하도록 지정된 所들이 있었다고 한다¹⁷⁾. 이와 함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충청도 영동현에 栗谷瓦所라는 곳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 점도¹⁸⁾ 참고된다.

그런데 기와는 그 기능상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지만, 그 개체별 중량이 무거운 데다 외부 물리적 충격에는 비교적 취약한 것이어서, 장거리 육로 운송은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등신장조와 울곡와소의 존재가 전하듯이 고려시대에 瓦所가 실제로 지방에 여러 곳 존재했다면, 그 위치는 대체로 예성강 벽란도로 연결되는 수로 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기와 가마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그곳이 중앙 공납을 의무로 부담하던 瓦所임을 의미하는 필요충분 조건일 수는 없으며, 반드시 해로 이용과 직결된 입지상의 잇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⁹⁾. 그 점과도 관련하여, 서해 침

14) 홍희유는 판적요의 위치를 개성과 장풍군 사이로 비정하고, 지포와 월계를 개경 인접 포구로 추정하는 등 이들 요장이 개경에 가까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았다(홍희유, 위의 책, 90쪽). 또 판적요지는 판적천 인근의 판문교 부근, 폐강요는 예성강 중류 북쪽의 錢浦 일대, 덕수요는 왕재 딸 왕씨를 화장한 덕수현 瓦村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요가 개경 인근에 위치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의 상세한 내용은 홍영의, 2012, 앞의 논문, 318~324쪽 참조.

15) 홍영의, 2012, 위의 논문, 323쪽. 제요가 인종 대 이전에 숯, 자기, 도기, 기와 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육요로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이정신, 2007, 앞의 논문, 75쪽).

16) 판적요는 만월대 출토 와편의 명문과 함께 <朴華墓誌銘>에서 확인이 된다. 묘지명에는 박화(1252~1336)가 1278년(충렬 4) 典理司書員을 거쳐 전주 임피현위에 임명되었고, 임기를 마친 후 들어와 내시로 수년간 복무한 다음, 판적요직을 시작으로 여러 중앙 관서의 벼슬을 거쳐 1310년(충선왕 2) 사헌규정에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至元十五年(1278, 충렬왕 4) 由典理司書員 任全州臨陂縣尉 罷秩 入內侍 積年勞 歷板積窯直供驛司醞署令紫雲坊判官至大三年拜司憲科正」). 따라서 그가 판적요직에 임명된 시점은 빨리 잡아도 대략 1285년(충렬왕 11) 이후라 할 것이다.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경기, 여주목, 古跡, 登神莊「高麗時 又有稱所者 有金所 銀所 銅所 鐵所 絲所 紬所 紙所 瓦所 炭所 鹽所 墨所 糞所 瓷器所 魚梁所 薑所之別 而各供其物」

18)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永同縣「本新羅吉同郡, 景德王改今名. … 栗谷瓦所姓一, 廉. …」

19) 청자가마터가 발견된 대전 구완동에 기와가마터가 확인되는 점과 관련하여, 이 기와가마터를 일단 瓦所의 그것이라 전제한다면, 유성현 동쪽 23리에 위치한 村介所나 福水所(『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공주목, 古跡) 중 하나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정신, 2007, 앞의 논문, 81쪽). 대전 구완동의 기와가마터가 장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향촌사회의 수요에 부응해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 공납의 의무를 지닌 瓦所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등신장조에 나열된 여러 所의 생산물이 오직 所에서만 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규모 축대시설과 함께 소규모 가마를 통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기와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 거창 월평리 瓦窯 유적을 瓦所의 그것으로 본 연구(이재명, 2012, 「거창 월평리유적 기와생산시설과 출토 평기와의 대한 검토」, 『경남연구』 6, 경남발전연구원, 91쪽)는 생산시설의 특성을 瓦所 비정의 근거로 삼은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이 경

물선박에서 개경行 청자가 다량으로 자주 출토되는 것과 달리 기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수로 교통으로 개경에 연결되는 한반도 서남해 연안에 瓦所가 과연 있었던가라는 합리적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침물선의 추가 사례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출토 사례들만으로 볼 때에는, 등신장조에서 얘기한 瓦所가 고려 당시 여러 곳에 실재했다면 그것은 일단 이른바 南道 지역들보다는, 육로·수로 막론하고 개경에서 지근한 거리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않을까 한다²⁰⁾.

어떻든 瓦所가 실재했다면 그 역시 所라는 특수행정구역의 하나인 만큼, 자기를 번조·공납하던 탐진현(현 강진) 大口所에 所吏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²¹⁾ 그 지역 長吏로서의 所吏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 所吏의 전체적인 지도와 통제 하에 전문 기술을 지닌 瓦匠이 중심이 되고, 일반 주민들이 기와 제작에 필요한 흙 채취와 운반, 흙 이기기와 반죽, 기와 형태로의 성형과 건조, 그리고 기와의 번조를 위한 땀감 채취와 운반과 같은 일체의 雜役을 수행하였을 것이다²²⁾.

그런데 이러한 瓦所의 생산은 빈번하게 진행된 궁궐전각의 조영과 개보수 속에서 당시 다른 물종의 所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중기에 접어든 1108년(예종 3) 개경 주변의 '京畿'지역 여러 군현에서 구리, 철, 자기, 종이, 먹을 생산하던 所의 장인들이 과도한 공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所를 떠나 도망하는 자가 많아서 중앙정부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하였다²³⁾. 이 때 구리, 철, 자기, 종이, 먹과 달리 기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瓦所의 사정도 흙의 성형과 가마를 이용한 번조라는 점에서 瓷器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몽골과의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所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간 흔적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자기소를 대표하는 탐진현 大口所의 경우, 13세기까지도 편년이 가능한 자기가 생산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또 고려의 대표적 철산지의 하나이던 충주 多仁鐵所는 몽골군을 잘 방어한 공으로 1255년(고종 42)에 翼安縣으로 승격까지 되고 있다²⁴⁾. 이는 전쟁 상황에서 무기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소재의 생산을 다인철소가 견실히 수행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된 결과에²⁵⁾ 다름 아닐 것이다. 그 동안 고려시대 所의 공물 생산이 12

우에도 기와 운송을 위한 수로 교통 이용상의 입지 유무가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곳을 瓦所로 비정하면서도 그 용도를 거창 일대에 대한 기와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瓦所를 중앙 공납용 기와의 생산지로 보는 통설과 큰 차이가 있다.
20) 기록상 유일한 瓦所인 울곡와소가 고려 당시의 瓷器所와 구분되는 슬한 磁器所·陶器所를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만 보이고, 정각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古跡條에 기록되지 않은 점도 충분히 유의할 만하다.

21) 所에도 군현이나 향·부곡처럼 호장, 부호장, 부호정 등 호장을 정점으로 한 향리의 위계질서와 직제, 그리고 향리들의 집무청으로서의 邑司, 즉 所司가 존재하였음이 보물 제1382호 청자국화도란무늬 '辛丑'명 벼루의 명문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서성호, 1997, 앞의 논문, 87쪽; 서성호, 1999, 「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88~289쪽).

22) 이정신, 2007, 앞의 논문, 78~79쪽; 정치영, 앞의 논문, 45쪽.

23) 『고려사』 권78, 지32, 식화1, 田制, 貢賦, 예종 3년 2월 「判, 京畿州縣, 常貢外, 徭役煩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 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 酌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艱苦, 而逃避, 仰所司, 以其各所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

24) 『고려사』 권56, 지10, 地理1, 楊廣道, 忠州牧 「高宗四十二年, 以多仁鐵所人, 禦蒙兵有功, 陞所爲翼安縣」

25) 尹龍燦, 1991, 「몽고의 침략에 대한 고려 지방민의 항전 -1254년 鎭州(鎭川)民과 忠州 多仁鐵所民의 경우」, 『국사관논총』 24, 국

세기 전반부터 전면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기 시작한 후 所체제가 붕괴 일로를 걸었다는 단순한 도식적 관점에 지나치게 매몰된 감이 없지 않다. 所체제의 하나인 瓦所도 그 점에서 예외는 아니며, 나아가 전술한 대로 그 실제 존재의 보편성과 구체적인 입지 문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 임시 役事에서의 기와 생산

고려는 왕조 초기부터 개경 궁궐전각의 신축과 중수·營繕 등을 수행하는 宮闕都監을 두었다²⁶⁾. 또 羅城이나 重光寺·演福寺²⁷⁾ 같은 사찰, 원간섭기~고려말 궁궐 신축 등의 조영과 遷都를 위해 造成都監을 두어²⁸⁾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그때그때 준비·징발하였다. 특별히 궁궐전각의 役事가 잦던 당시에 육요와 와소의 기와는 당연히 궁궐도감, 조성도감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役事 규모에 따라 육요와 와소의 기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민간 와장을 부역 징발하여 직접 기와를 구워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개경의 官 役事에서 瓦匠 징발을 직접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현종 대에 개경 나성을 축조하면서 인접 군현민들을 중심으로 役夫와 工匠을 동원한 사실에서 볼 때²⁹⁾, 임시 건축 役事에서도 瓦匠을 포함한 각색 匠人들이 개경과 그 인근 군현들을 대상으로 징발되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官의 役事에서 瓦匠의 부역 동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방 소재 사찰 및 公館과 관련한 사례들이다. 1021년(현종 12) 직산현 성환역 인근의 奉先弘慶寺[弘慶院]의 창건이 그 하나인데, 役事의 전말을 기록한 崔冲의 <奉先弘慶寺記>에 따르면, 국고를 쓰지 않고 질흙 다루는 이로 하여금 기와를 만들게 했다 [陶人施瓦]고 한다³⁰⁾. 봉선흥경사는 현종이 아버지 安宗 郁을 기리며 직산현 성환역 인근에 창건한 사찰로서, 이곳을 통해 행인들에게 휴식과 안전,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왕명으로 僧錄司의 최고위급 승려인 左右兩街都僧錄³¹⁾ 迥兢이 역사를 주관하고, 재상 강민첨과 김맹이 감독한 국가적 役事였지만, 개경 인근의 육요나 지방의 와소에서 다량의 기와를 장거리 운송해 오는 일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봉선흥경사보다 1세기 뒤인 1120년(예종 15)에도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 휴식의 제공을 위해 왕명으로

사편찬위원회, 171쪽.

26) 『고려사』 권77, 지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宮闕都監[光宗十二年 置修營宮闕都監 文宗三十年 置宮闕都監 辛禡六年 又置]」

27)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0년 11월 丙寅; 同 권6, 세가6, 靖宗 9년 9월 丁丑; 同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1월 乙酉.

28)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7월 庚寅, 丙申; 同 권32, 세가32, 충렬왕 33년 6월 丙午; 同 권36, 세가36, 충혜왕 후4년 7월 辛未; 同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1월 乙酉; 同 권113, 열전26, 諸臣, 崔瑩; 同 권83, 지37, 兵3, 工役軍, 충혜왕 후4년 5월.

29)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1년 6월 辛卯 「築羅城營重光寺吏僧俗工匠並加階職, 赴役者減今年調布, 諸州郡縣逋欠, 限戊辰年 蠲免」

30) 『동문선』 권64, 記, 奉先弘慶寺記 [崔冲] 「… 它徒勿奪於農時, 程物免煩於公帑. 陶人施瓦, 木客供材. 靈鉅風斤, 蜂聚蕩心之匠. 雲鏃電錘. 駿奔游手之群. 起自丙辰秋. 迄于辛酉歲」

31) 許興植, 1992,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342쪽.

惠陰寺가 창건되었다. 예종의 근신 少千은, 국가 경비를 쓰지 않고 백성들도 동원하지 않기 위해, 승려들을 모아[不費國財。不勞民力。但募浮圖人] 일을 하겠다고 왕에게 다짐했다. 묘향산사를 찾은 소천에게 주지 혜관이 호응하며 뽑아 보내 준 “성실하고 기술 있는 證如 등 16인[勤恪有技能者證如等十六人]”은 木手, 石工, 瓦工과 같은 불교 가람 건축에 핵심적인 工種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³²⁾. 이들 승려가 기계를 버리고 재목과 기와를 모아 마련하였다[利器械鳩材瓦]고 했으니³³⁾, 국가 경비를 쓰지 않고 기와를 마련하는 방법은 이들 승려 중의 瓦匠僧이 직접 기와를 굽는 일에 다름아닐 것이다. 즉 기와는 묘향산사의 주지 혜관이 추려 보내 준 16인의 승려 가운데 瓦匠僧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³⁴⁾.

고려 후기인 1320년대 후반 公州 東亭의 신축 때에도 瓦匠을 무상 동원하였다. 공주 수령으로 부임한 민상백은 문서를 발송해 가며 匠人을 모으고 역을 부과하면서[公乃分牒聯屬。聚工徵役], 館舍와 창고, 학교, 사찰, 정자 등을 수리·복구하였는데, 그 과정에는 목재를 강물에 띄워 운송해 오고 동쪽 언덕에서 기와를 구워[陶埴于東阜] 조달하는 일이 포함되었다³⁵⁾. 산림의 나무를 베어 강물로 건축 현장에 운반해 오는 일은 이후 조선시대 別瓦窯에서도 민폐로 지적될 정도의 큰 부담이었지만³⁶⁾, 민상백은 공주 주민들을 부려 재목을 마련하고 기와도 굽게 한 것이다³⁷⁾.

그런데 官 역사에서 瓦匠을 부역 징발하던 한편에서 일부 다른 모습도 보인다. 1343년(충혜왕 후4), 금강

32) 7세기 영묘사의 장륙삼존상, 천왕상, 천왕사의 팔부신장상 등을 조각하고 殿塔의 기와를 만들었다는 신라승 양지(『삼국유사』 권 4, 의해5, 良志使錫)처럼 고려시대에도 제와 기술을 보유한 瓦匠僧을 비롯하여, 刻字, 石工, 鐵匠, 木手 등 다양한 工種의 工匠僧들이 사원의 창건과 중수, 영선 공사에서 역할을 하였다(韓基汝,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207쪽).

33) 『동문선』 권64, 記, 惠陰寺新創記 金富弼 「(近臣少千) 奏曰殿下幸聽臣有一計。不費國財, 不勞民力。但募浮圖人 … 上曰可。汝其圖之。於是公事, 抵妙香山寺。告於衆中曰 … 惠觀老不能行, 擇勤恪有技能者證如等十六人, 資送之。以冬十一月到其所。作草舍以次之。上命比丘應濟主典其事。弟子敏清副之。利器械鳩材瓦。經始於庚子春二月, 至壬寅春二月, 工既告畢」

34) 파주 혜음원지 서쪽 외곽담당지에서 출토된 ‘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李明’명 와편은 혜음사 창건 20년 뒤인 1140년(인종 18) (파주시·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파주 혜음원지-6,7차 발굴조사보고서』, 186쪽)에 瓦匠 李明이 만든 기와라는 뜻이다. ‘孝明’[學明]은 그 이름으로 볼 때 승려로 추정된다.

35) 『동문선』 권65, 記, 公州東亭記 「州治東二百武, 有廢地, 傳云古迎春亭也。… 驪興閔祥伯刺是州, 年未期, 職修治成, 庶政有餘暇。公乃分牒聯屬, 聚工徵役。將使州治之館舍庫廩庠塾寺院亭觀之猥陋弊亡者, 靡不革復之 … 流材于上游, 陶埴于東阜」 이 역사의 시기를 1301년(충렬왕 27)으로 비정하기도 한다(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 -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한국중세고고학회, 64쪽). 1301년은 민상백의 형이자 민지의 맏아들인 민상정(1281~1352)(『민지모지명』)이 21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해이다(『登科錄前編』(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4650-1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인용). 또 당시 공주가 지주사로 강등되어 있었지만, 지주사 역시 5~6품 이상이므로, 민상백이 과거에 급제(또는 음사 입사) 후 초임사직을 거쳐서 5~6품직인 지공주사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대략 1320년대 후반 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36)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壬辰 「命勿令平民, 輸燒木于別窟 上聞別窟燒木, 令水邊郡民輸出江邊, 又奪私船載下, 歎曰: "予意今百姓已安矣, 無乃復有如此勞民之事乎?" 左右皆默然 上乃傳旨于議政府曰: "別窟燻瓦, 只供私處之用, 其燒木出浦, 勿役平民。”」

37) 고려시대에 중앙의 육요처럼 지방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한 官窯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정치영, 2006, 앞의 논문, 35~36쪽). 다만 公私를 막론한 기와 수요 자체가 지방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만큼 그때그때 役事 발생시에 관내 瓦匠을 징발하여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 금마면 신용리 미륵산성 동문지 주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기(추정) 암키와편에 ‘金馬郡瓦窯店’이란 명문이 보이는데(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1, 『益山 彌勒山城 東門址 周邊發掘調查報告書』, 47쪽. 보고서에는 ‘金馬郡凡窯店’라고 돼 있으나 ‘凡’은 ‘瓦’로 봐야 한다), 이 역시 축성과 같은 임시 役事를 위해 조직된 변화기구로 보인다. 본고에서 ‘官窯’란 개념은 일단 상설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산에서 진행된 長安寺 중흥 역사에서는 瓦匠을 고용하여 기와를 굽게 한 것이다. 이 역사는 기황후가 元 順帝와의 사이에 낳은 皇子和 황제의 영원한 命을 빌기 위해 內帑 楮幣 1천 錠을 장안사 중수 비용으로 출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역사인 셈인데, 그 전말을 기록한 李穀의 <金剛山長安寺重興碑>에 따르면, 산에서 재목을 취하는[取材於山] 한편으로, 인부를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돌을 갈고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僦面雇夫 礮石陶瓦]³⁸⁾. 앞서 본 봉선흥경사나 혜음사의 역사와 비교하면, 국가적 역사라는 점은 양쪽이 동일하면서도 기와 조달의 방식에서는 부역 동원과 품삯 고용이라는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1383년(우왕 9)의 重房 청사도 瓦匠 등 여러 장인을 품삯으로 고용하여 신축하였다. 공사에 쓸 재목을 값을 치러 사들이고[材易以直], 그 재목은 세를 주고 빌린 수레로 운반하였다[雇車輸材]. 자재 운반 등 여러 잡역은 응양군과 용호군 및 궁중내 병영, 감문위 등의 하급장교[近仗內廂監門尉正]들이 군사를 각각 나누어 일하게[分曹赴功] 했지만, 기술자인 ‘工匠’은 재가승려들이 품삯을 받고 나와 일을 했다[其工匠則髡而家居者受傭競進]³⁹⁾. 이들 ‘공장’은 역사의 성격상 木工을 비롯해서 石工과 鐵匠, 泥匠, 瓦匠 등 건축공사에 필수적인 工種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중방 청사의 역사에서 조성된 大廳과 西廳, 樓庫, 南廊 등은 모두 丹青으로 채색[塗墍丹腹]하였다고 하므로 이것들이 기와를 얹는 건물들임은 명백하거니와, 핵심 자재 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목이므로[材易以直], 기와는 다른 工種의 ‘공장’들과 함께 품삯을 받은 瓦匠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와를 번조해 조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瓦匠에게 품삯을 주고 기와를 번조시킨 예는 1389년(창왕 원년) 도평의사사 청사 조영에서도 확인된다. 왕명을 받은 정도전이 공사의 전말을 기록한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에 따르면, 재목을 자르고 벽돌과 기와 만드는 작업[削材搏瓦]을 모두 품삯을 주는 무리[雇直之徒]를 부려서 했다고 한다⁴⁰⁾. 앞의 중방 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공종 匠人들을 품삯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38) 『가정집』 권6, 碑, 金剛山長安寺重興碑「聖天子龍飛之七年, 皇后奇氏以元妃生皇子, 既而備壺儀居于興聖之宮, 顧謂內侍曰, 予以宿因, 蒙恩至此, 今欲爲皇帝太子祈天永命, 非託佛乘, 其何以哉. 凡其所謂福利者靡所不舉, 及聞金剛山長安寺最爲殊勝, 祝釐報上, 莫茲地若也. 越至正三年(1343, 충혜왕 후4), 出內帑楮幣一千定俾資重興, 永爲常住. … 比丘宏辨見其頽廢. 與其同志. 誓於所謂曇無竭曰所不新茲寺者, 有如此山. 卽分幹其事, 廣集衆緣, 取材於山, 鳩食於人, 僦面雇夫, 礮石陶瓦, 先新佛宇, 賓館僧房, 以次粗完 …」 崔永好, 2000,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 95, 국사편찬위원회, 167쪽; 정치영, 앞의 논문, 37쪽.

39) 『목은문고』 권6, 記, 重房新作公廡記「洪武癸亥冬十月初吉, 鷹揚護軍裴矩, 來致其班主密直崔公之言曰, 吾重房修造記, 敢煩先生. 乃出功載, 大廳三間, 西廳三間, 樓庫三間, 南廊九間, 門一間, 塗墍丹腹, 外繚墻垣, 亦一大役也. 材易以直, 不足則都統崔侍中助之巡軍布二百五十疋. 近仗內廂監門尉正, 分曹赴功. 其工匠則髡而家居者, 受傭競進. 雇車輸材, 差官董役. 始于五月廿四日, 訖于九月晦日而畢 …」

40) 『삼봉집』 권4, 記, 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己巳「洪武二十二年十二月丙午, 殿下命臣道傳曰, 都評議使, 實予相臣, 左右我寡躬者也. 當政之始而使司廳適成, 爾宜記其顛末, 明示後世 … 凡削材搏瓦, 皆役雇直之徒, 而督勤工繕, 經營於旬月之間, 民不知勞 …」. ‘雇直’은 품삯을 뜻한다. 『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 11월 18일 「方其役也, 雇直不以日而負, 立表計遠近而差等, 則强者優取百錢, 弱者足庇庇一身, 此豈特府民.」 이외에도 「승정원일기」 97책 (탈초본 5책) 인조 25년 4월 5일 丙子, 同 168책 (탈초본 9책) 현종 2년 5월 20일 戊辰 등 다수.

3. 寺院과 私窯 瓦匠의 기와 생산

고려시대에 기와 수요는 궁궐, 관아 청사 등 통치·군사 시설과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있는 소수의 가옥 외에는 불교 사원에 집중되었다. 그러한 만큼 기와의 제작 기술을 불교 사원이 선도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충렬왕 때 왕명으로 六然이란 승려가 江華에서 琉璃瓦를 구웠는데, 黃丹을 많이 사용해 구운 유리瓦가 ‘南商’의 그것보다 품질과 빛깔이 우수했다는 것은⁴¹⁾ 잘 알려진 일이다. 유리瓦와 제조와 같은 특수하고 선진적인 번와 기술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도질 기와를 자체적으로 번조해 조달하던 사원의 오랜 전통이 축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실제로 불교 사원은 燔瓦 기술을 가진 승려 등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기와를 구워 조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天龍寺 부근에서 발굴된 기와 가마가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천룡사나 여타 사원들을 위한 사원 전용 와요지로 추정된 바 있고⁴²⁾, 여러 지역의 사찰 유적이거나 그 인근에서 출토된 와편 명문들 중 ‘元香寺瓦匠僧順文’⁴³⁾, ‘庚申二月三十日惠陰寺造匠孝明’(파주 혜음원지)⁴⁴⁾, ‘興法寺惠然造’(원주 안창리)⁴⁵⁾, ‘大禪師 淵亓 代○○ 智成燔造’(중원군 하천리 정토사지)⁴⁶⁾ 등에 보이는 瓦匠僧順文과 孝明[學明], 惠然, 智成이라든지, ‘燔瓦志清慈行志惠’(신록사보제존자석중비 陰記)의 志清과 慈行, 志惠는 모두 사원 자체 가마에서 기와를 번조하던 瓦匠僧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들 瓦匠僧 중에는 소속 사찰이나 인근의 기와 수요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넓혀 간 이들도 있었다. 신안군 신용리(압해도) 건물지 출토 ‘癸卯三月’, ‘大匠惠印’명 와편과⁴⁷⁾ 문양과 색조, 서체가 동일한 진도 용장산성 동벽구간 출토 「大匠惠」명 와편 및 同 북벽구간 출토 「三月」명 와편⁴⁸⁾, 그리고 완도 법화사터 출토 ‘癸卯三月大匠惠印’명 와편은⁴⁹⁾ 특정 시기에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기와의 유통 범위의 일단을 잘 보여 준다. 즉 와편이 출토된 신용리(압해도) 건물지는 고려 당시 압해군의 지역이고⁵⁰⁾,

41) 『고려사』 권28, 충렬왕 3년 5월 壬辰 「遺僧六然于江華, 燔琉璃瓦, 其法多用黃丹, 乃取廣州義安土, 燒作之, 品色愈於南商所賣者」. ‘南商’에 대해서는 ‘남도상인’(劉敎聖, 1965,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040쪽; 김동철, 1985,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9, 부산대학교 사학회, 210쪽, 217쪽), 또는 중국 宋상인(손영중·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1)』, 공업출판사, 345쪽)이라는 등의 견해가 있다.

42) 李相宣, 1991, 「高麗 寺院의 商行爲 考」, 『誠信史學』 9, 誠信女子大學校 史學會, 26쪽.

43) 홍영의, 2015, 앞의 논문, 35쪽.

44) 파주시·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186쪽.

45) 홍영의, 2015, 앞의 논문, 32쪽.

46) 한국대학교박물관협회·연세대학교 박물관, 1985, 『韓國의 銘文: 연세대학교 창립100주년기념 한국대학교박물관협회 연합전시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12쪽.

47) 목포대학교 박물관, 신안군, 2005, 『신안 신용리 건물지』, 32-35쪽.

48) 목포대학교 박물관, 2006, 『진도 용장산성』, 34쪽, 49쪽.

49) 文化財研究所, 1992, 『莞島法華寺址』, 83쪽.

50)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전라도 靈光郡 「壓海郡…高麗初, 爲羅州屬縣, 後來屬. 有只上島·道沙島·斤斬島·述只島·毛也島·八欠島·靑安尼島」.

진도 용장산성은 진도현⁵¹⁾, 완도 법화사터는 탐진현의 지역이었으니⁵²⁾, 이들 와편에 등장하는 惠印이라는 瓦匠(僧은⁵³⁾ 곧 서남해 연안 수로를 이용하며 압해군과 진도현, 탐진현 등 최소 3개 이상의 군현들을 대상으로 기와를 생산·유통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승려 혜인은 영암 天皇寺址와 완도 법화사터에서 출토되는 와편의 ‘大匠 〇明’과 함께⁵⁴⁾ 전라도 서남해 연안일대에서 복수의 군현을 대상으로 광역 활동을 펼치던 瓦匠이었다고⁵⁵⁾ 할 것이다.

사원과 달리 일반 민간에서는 인구당 기와집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도 개경에 瓦匠들이 집중 거주하며 활동했을 것이다. 몽골과의 전쟁 이전 수도 개경의 인구는 1232년(고종 19) 현재 고려 정부 추산으로 대략 10만戶였다⁵⁶⁾. 이는 가구 1호당 5명으로 환산시 대략 50만의 인구가 되어 다소 과다한 수치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약 4만호, 즉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⁷⁾. 물론 1123년(인조 1)에 宋 사행으로 온 徐兢은 개경의 기와집이 열 집 중 하나들에 불과하다 했으나⁵⁸⁾, 이는 송 수도 開封과의 차이를 부각하려는 데서 비롯된 과장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대략 전체의 약 20~30%, 즉 8천호~1만 2천호 가량의 기와집이 있었다고 추산해서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개경에서의 가옥의 수리나 증·개축, 또는 신축의 수요에 부응하는 개경 瓦匠의 생산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한층 활성화되어 있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 개경 지역 瓦匠 중에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 초빙되어 기와를 굽는 예도 있었다. 고려 당시의 有恥鄕 지역으로 비정되는 장흥군 유치면 대리 상방촌 건물지에서 ‘愿堂主散員同正表元載京瓦匠莫志’라 새긴 기와가 발굴되었는데⁵⁹⁾, 함께 출토된 명문 기와들을 종합해 볼 때⁶⁰⁾, 산원동정 표원재가 고향 유치향

51)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전라도 珍島縣 「… 高麗, 屬羅州, 後置縣令. …」

52) 법화사터가 있는 완도는 고려 당시 탐진현의 지역이었다.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전라도 장흥부 耽津縣 「… 別號鼉山. 有富仁島·恩波島·碧浪島·仙山島. 又有莞島.」

53) 惠印은 그 이름으로 미루어 승려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정치영, 앞의 논문, 43쪽).

54) 靈巖郡·順天大學校博物館, 2005, 『天皇寺I-1차발굴조사보고서』, 68쪽; 문화재연구소, 1992, 앞의 책, 85쪽.

55) 홍영의, 2020, 앞의 논문, 71~72쪽. 다만, ‘大匠 〇明’은 그의 기와가 사찰들에 공급되고는 있지만, 이름의 ‘明’자만으로 그를 승려 신분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56)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9년(1232) 6월 「〇崔瑀會宰樞於其第, 議遷都. 時, 國家昇平既久, 京都戶至十萬, 金碧相望. 人情安土重遷, 然畏瑀, 無敢發一言者.」 박용운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전성 시기 개경의 인구를 10만호=50만명 정도로 보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朴龍雲, 1996,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67쪽).

57) 박진훈, 2021, 「고려시대 개경민의 주거 문제와 생활 공간」, 『서울학연구』 83, 서울학연구소, 41쪽

58)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 城邑, 民居 「城雖大 礪礪山壘 地不平曠 故其民居形勢高下 如蜂房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不過兩椽 比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59)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장흥 상방촌A유적II -건물지- 탐진다목적댐 수물지역 문화유적IX』, 114쪽. 이 보고서에서는 「厚心堂主…」로 판독했는데(이들 와편의 명문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앞서 고용규의 논문에서도 상세히 정리된 바 있다. 고용규, 2007, 「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참조), 보고서 240쪽의 그림 95-178(고용규, 앞 논문, 342쪽 사진 23·24)에서 ‘心’자의 위치나 점유 공간 등으로 보아 ‘厚心’보다는 ‘愿’일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건물지를 유치향 資福寺의 것으로 추정한 최연식도 ‘愿’자로 판독한 바 있다(최연식, 2010, 『海南 大興寺所藏 ‘塔山寺銅鐘’ 銘文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6, 한국목간학회, 187쪽 주39).

60) 명문기와편들 내역은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위의 보고서, 112~115쪽 참조.

에 愿堂을 창건 내지 증개축하는 데 필요한 기와를 위해 ‘京瓦匠’, 즉 개경에서 활동하던 瓦匠을 초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¹⁾. 이때 굳이 기와에 ‘경와장’이라고 새긴 것은, 상대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개경 와장이 구운 것임을 드러내어 佛事의 격을 높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닐 것이다. 高嶺寺飯子(1214년, 고종 1), 靑林寺銅鐘(1222년, 고종 9), 神龍寺小鐘과 神泉寺 반자(1238년, 고종 25), 지리산 安養社반자(1252년, 고종 39)를 만든 개경의 유명 장인 韓仲紱를 안양사반자의 명문에서 ‘京師工人’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⁶²⁾. 다만 莫志와 같은 瓦匠은, 충격에 취약하면서도 다량으로 요구되는 기와의 특성상 공사 현지에서 번조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므로, 날개의 청동제품을 만드는 한중서 같은 장인에 비해 제품 주문처의 지역적 제약은 훨씬 컸을 것이다⁶³⁾.

개경 瓦匠의 私窯 활동은, 13세기 후반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특히 14세기에 들어서 官 주도 공사에 기와를 판매하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1309년(충선왕 후 원년) 8월에 충선왕은 개경의 부자들에게 宣義門 안 도로변의 빈 공간에 기와집을 짓도록 명령하는 한편, 개경 내 기존 민가들도 모두 기와를 엮도록 명하면서 私窯를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⁶⁴⁾. 앞서 같은 해 3월 충선왕은 康安宮과 延慶宮의 중수를 지시하면서, 公私의 가옥 자재를 모두 官에 거둬들이는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자재 중 하나인 기와 역시 私窯 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공사 추진에 대한 朝野의 반발로 강안궁 공사는 취소되었지만, 연경궁 중수는 그대로 추진하여 3월에 완공시켰다⁶⁵⁾. 이처럼 연경궁 중수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私窯 금지의 사유가 소멸한 데다가, 전술했듯이 8월에 충선왕 스스로 선의문 안쪽

61) 서성호, 2017, 「고려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의 문화·경제적 면모-항리층을 중심으로」, 『고려 역사상의 탐색-국가체제에서 가족과 삶의 문제까지』, 집문당, 231쪽.

62) 『韓國金石文追補』〈安養社飯子〉「高麗二十三壬 環甲之年 壬子 四月十二日 在於京師工人家中 鑄成智異山安養社之飯子 … 工人別將同正韓仲紱」。한중서에 대해서는,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紱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 韓國美術史學會 참조.

63) 莫志가 전라도 장흥군 유치향에서 기와를 번조한 데 대해, 고려말 공장안이 유명무실해진 결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방 유력자나 사원에 소속되어 제품생산에 종사한 사례라고 보기도 한다(홍영의, 2020, 앞의 논문, 62쪽). 瓦匠 莫志가 개경을 이탈하여 지방 유력자나 사원에 소속되었다면, 본인과 의뢰인을 막론하고, 기와에 굳이 개경 瓦匠임을 새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기와 제작 시기인 ‘壬辰年’도, 함께 출토된 청자 등으로 볼 때 고려말이 아니라 1052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견해(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장흥 신월리 건물지-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 문화유적X』, 111쪽)도 참고된다.

64) 『고려사』 권33, 충선왕 후 원년 8월 辛亥 「王命令富人, 就宣義門內閑地, 緣道作瓦屋. 又命五部民家, 皆蓋以瓦, 命毋禁私窯」 선의문은 고려전기부터 사행단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개경 도성안으로 들어서는 관문이었다. 따라서 충선왕이 그 안쪽 도로변 공터에 기와집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곳이 외국 사신들의 고려 도성에 첫 들어서는 초입이어서 개경의 인상을 결정하는 민감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선의문을 들어선 외국인들은 큰길을 따라 동쪽으로 직진하면 개경의 중심인 十字街(현재 남대문이 소재한 곳)와 만나고, 여기서 왼쪽으로 광화문 앞까지 뻗은 南大街를 따라 올라와 궁궐로 간다. 그 과정에 목격될 많은 초가집도 충선왕으로서는 마음에 걸린 듯하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원나라 大都에서 왕자 때부터 살았던 충선왕으로서는 막 복위한 자신의 나라 수도 개경의 경관을 일신하고자 한 것 같다. 후술하듯이 1406년(조선 태종 6)에 승려 海宣이 민수용 기와 공급을 위해 別瓦窯 설치를 건의할 때도 화재의 위험과 함께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며 보기에 초가 일색인 한양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己未) 왕을 설득한 것이 주요하였다.

65)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후 원년 3월 癸巳 「命檢校中護裴挺, 內府令姜融, 重新康安·延慶二宮. 中外公私屋材, 並令官收, 以供營構, 朝野怨之, 尋罷康安宮之役. 及延慶宮上樑, 倣上國之制, 百官皆賀, 用銀絹紵布爲幣, 宴六品以上. 殿宇廊, 凡四百一十楹, 挺之指畫也。」

瓦屋거리 조성과 개경 민가의 전면 瓦屋化를 추진했기에 그간의 私窯 금지는 당연히 해제하게 된 것이다.

사요 금지 해제로 사적 생산활동을 재개한 개경 私窯의 기와들은 민간에서뿐 아니라 官에서도 이를 구입해 사용하였다. 1330년(충숙왕 7) 軍簿司(옛 병부) 청사 중수 공사는, 군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기와와 재목은 구입해 쓰고 있다[先市材瓦]⁶⁶⁾. 또 1333년(충숙왕 10)에 춘추관 수찬 安員之 등이 추진한 禁內 청사 중수에서는 관원 각자가 개인 비용으로 工匠을 고용하고[私雇工匠], 家奴를 부리는[各役家僮] 한편으로, 기와와 材木을 관서 예산[公廩錢]에다 관원 개인이 借用한 비용으로 역시 구매하고 있다⁶⁷⁾. 이처럼 중앙 핵심 관부의 청사 건축 공사에서 私窯의 기와를 구매해 사용한 예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지방의 민간 瓦匠 활동은 사찰터를 비롯한 건물지 출토 명문 기와들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와편의 명문이 지닌 정보는 기와 제작 시기와 기와 귀속처, 기와 장인의 직함과 이름, 시주자, 그리고 役事 관계자 정도이고, 그나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경우는 드물고 일부 사항만 기재돼 있는 게 대부분이며, 같은 내용의 부분들이 파편에 남아 전체의 재구성이 가능한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大匠’이라는 직함을 전하는 와편들 역시, 大匠을 정점으로 한 瓦匠 조직 내부의 구조를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 각지 출토 명문와편들은 각 개체로든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것들의 종합으로든, 기와 생산 구조나 瓦匠 조직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 주는 명문 와편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인 것이다⁶⁸⁾.

그러한 가운데 지방 사회 일부 瓦匠이 관여한 기와 생산 및 유통의 범위를 유추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동일 인물임이 명확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瓦匠의 이름이 보다 확대된 지역권으로 묵일 수 있는 상이한 지역 출토 와편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永同 稽山里 출토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瓦草匠水鳥水院矣’명 와편⁶⁹⁾, 안성 봉업사의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凡草近<瓦草匠>水(仁)水(吳)矣’명 와편⁷⁰⁾, 영동 읍성 출토 ‘○○匠水鳥水流矣’명 와편⁷¹⁾, 영동 금성사의 ‘太平興國七年壬

66) 『拙藁千首』 권1, 文, 軍簿司重新廳事記「自權臣擁主卷入江華以後, 宮室官廬同爲瓦礫藥莽之墟者三十有九年。至元庚午, 克仗皇靈, 獲復舊京。時有部貳奇公洪碩, 治其故地而重營之。自此至天曆己巳, 又閱六十年之久。其間未有紹繼而能繕理者, 則棟樑欄檻, 胡得不腐敗摧折而日就傾圮哉。鷹揚上將金侯就起適貳于司, 始蒞之日… 於是出令新之, 仍委佐郎金君玩董其役。金君乃出公庫羨財, 先市材瓦。凡所指畫, 皆出至誠, 故軍卒樂其赴, 不督而自辦。經始於翌年庚午二月, 至五月而功告訖。」

67) 『稼亭集』 권2, 記, 禁內廳事重興記「… 自國都遷徙, 王宮官府破壞無遺。庚午復都之後, 未遑營構, 以文翰官不可一日無其所, 乃賜舊議政之堂。因仍餘六十年, 日趨頽圮, 未有能修葺者。元統癸酉(1333, 충숙왕 후2) 六月有日, 禁內諸君小酌酒行, 春秋修撰安員之獨不飲, 且曰, 吾在此已七年, 今將去矣。每夏雨屋漏, 坐臥無地, 岌岌然如在巖墻下, 諸君不以爲意, 或言修造者, 羣笑之曰。書生知飲酒賦詩而已, 何以居處爲。噫, 世之人士凡所以自奉者, 力盡乃已, 其視官府, 獨不如居室哉。衆皆曰然。修撰是聽, 於是出公廩錢若干緡, 不足則借錢人家, 立市材瓦, 請夫於官不得則私雇工匠。各役家僮, 自食之而自督之。始於八月乙丑, 爲日五十, 爲夫五百, 爲廳四楹, 深廣增舊制各三尺。爲史庫南門各二楹, 皆中程度。侈前而不奢, 貽後之可繼。始焉笑之者, 終則愧伏。工既畢, 寄書都下, 求余文記其事… 元統二年(1334) 九月既望, 記。」

68) 기와의 명문 내용을 결정했을 건축주나 役事 관계자로서는, 앞에 본 유치항 출토 기와 명문의 ‘京瓦匠’처럼 특별히 밝힐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瓦匠 조직이나 기와 생산의 작업 구조 등을 명문에 밝힐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근까지 출토된 고려시대 명문 기와의 발굴 현황과 명문의 핵심 내용 등은 홍영의, 2020, 앞의 논문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69)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2002, 『永同 稽山里遺蹟』, 185쪽.

70) 京畿道博物館·安城市, 2002, 『奉業寺』, 162쪽. 보고서에서 ‘凡草近’으로 판독한 부분은 ‘瓦草匠’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71)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1997, 『永同邑城 地表調査 報告書』, 도면 40-2.

午三月日 竹州瓦草匠水虎水點矣作⁷²⁾명 와편⁷²⁾ 등이 그러하다. 이것들은 명문 내용과 유사한 물리적 특징 등으로 볼 때, 고려 초 竹州에 근거를 둔 水鳥水院矣라는 瓦匠,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瓦匠 집단이 영동현·안성현과 같은 인접 군현들의 사찰이나 주거지, 성곽 등의 役事に 직접 참여, 또는 주문 생산의 형태로 기와를 제작·공급하였음을 보여 준다. 水鳥水院矣 내지 그와 지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한반도 중부 내륙의 이 瓦匠들은, 앞서 살핀 전라도 서남해 연안의 瓦匠僧 惠印과 瓦匠 ○明처럼, 複數의 인근 군현들 수요에 부응하며 생산 활동을 펼치던 瓦匠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접한 複數 군현 범위의 광역 수요를 대상으로 기와를 생산·공급하던 瓦匠은 비단 위에 든 서남해 연해안이나 특정 내륙 지역에만 존재한 것은 아닐 것이다.

III. 조선시대 官의 기와 생산과 瓦匠

1. 瓦署와 別瓦窯

1) 瓦署

조선은 건국 직후 官制를 정하면서 新都 건설을 위해 중9품직 東窯直과 西窯直을 각 1인씩 두었다⁷³⁾. 1404년(태종 4)의 한양 재건도 이후 본격화한 新都 건설에 쓸 기와를 공급한 東窯와 西窯는 1460년(세조 6)에 통합하여 ‘瓦窯’라 칭하고, 5품직인 別坐 2인을 두었다⁷⁴⁾. 1464년(세조 10)에 세조가 원각사 법당용 靑瓦를 위해 瓦窯提調 仁山君 洪윤성을 부른 것⁷⁵⁾으로 보아 그 사이에 별좌 대신 훗날 『경국대전』에 보이는 提調를 정점으로 한 직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瓦署’라는 명칭이 1470년(성종 원년) 4월에 사용된 사실로⁷⁶⁾ 볼 때, 세조 10년~성종 원년 사이 어느 시점에 瓦窯에서 瓦署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瓦署는 후에 提調 1인과 別提 3인의 朝官, 4인의 書吏, 100명의 노비와 함께, 40명의 瓦匠, 4명의 雜象匠이 속한 중6품 아문으로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다⁷⁷⁾.

72) 홍영의, 2015, 앞의 논문, 49쪽.

73)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丁未 「定文武百官之制… 東西窯, 直各一…」

74)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丁酉 「吏曹啓: "今奉傳旨, 可減員及可革司磨勘具錄以啓. … 東窯直一, 西窯直一東西窯合稱瓦窯, 只置別坐二員, …" 從之」

75)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6월 甲午 「召瓦窯提調仁山君 洪允成, 議圓覺寺法堂所蓋靑瓦, 凡八萬張, 燔造所入甚鉅。」

76) 1470년(성종 1) 4월 戶曹가 瓦署를 비롯하여 사복시·사축서·전생서·서빙고·사포서에 바치는 穀草의 分定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성종실록』 권4, 성종 1년 4월 丁巳).

77) 『경국대전』 吏典 京官職, 從六品衙門, 同 吏典 京衙前, 同 工典 京工匠, 同 刑典 諸司差備奴隨奴定額.

瓦署의 窯場은 당초의 동·서요 窯直이 종9품직이었다가 이후 승격해 간 과정에서 보다 확충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요장과는 별도의 가마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종루~남대문, 종묘앞 樓門~동대문 길 좌우에 행랑을 짓기로 하면서 기와 마련을 위해 別窯를 다시 세운 일⁷⁸⁾, 1504년(연산군 10)에 성균관을 지으며 또 별도의 瓦窯를 설치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⁷⁹⁾.

이렇게 새로운 役事에 따른 가마의 추가 설치는 瓦匠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세조가 효령대군과의 舍元殿 예불시 사리 이적을 목격하고 추진한, 법당에 덮을 청기와만도 8만여 장에 달한다는 원각사의 창건이나⁸⁰⁾, 문종이 즉위 직후 대간의 반대 속에 밀어붙인 대자암 중창처럼⁸¹⁾ 갑작스런 대규모 役事일수록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 관계없이 瓦署의 와장들에게는 일반적인 營繕 역사의 예에 따라 두 끼의 식사[兩時料]가 제공될 뿐이었다⁸²⁾. 瓦署의 瓦匠들은 燔瓦 노동과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비싼 代立價를 노린 瓦署의 노비들에게도 시달렸다. 瓦署 노비들이 자신의 身貢보다 훨씬 비싼 代立價에 혹한 나머지 비싼 비용 때문에 瓦匠 스스로 원치 않는 代立을 할 것을 압박하는 일이 많았고, 이를 당하는 瓦匠들은 대립을 허락하고 나서야 노비들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⁸³⁾. 무거운 부역 노동의 부담, 부역 시의 식사 제공 외에 특별한 댓가도 받지 못하는 현실, 비싼 대립가를 노린 瓦署 노비들의 압박 등은 瓦匠들에게 가능한 한 瓦署를 벗어나려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왜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瓦匠에 대한 통제는 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78)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7월 21일 壬辰 「命構都城左右行廊。上曰：“自鍾樓至南大門，自宗廟前樓門至東大門，左右欲建行廊。予既斂怨於民，寧畢造以燕翼子。宜以忠清、江原兩道年例所取材木，營之。”朴信、韓尙敬、鄭擢、黃喜等曰：“年例材木，恐未周足，宜於忠清、江原水邊各郡，量宜分定。”信又請復置別窯，以備蓋瓦，上皆許之。命朴子青督其役，發兩界各道僧軍六百名、京畿·豐海道船軍一千名，以赴其役。」 이때 박신이 ‘復置別窯’하자고 청하여, 이해 4월에 폐지된 별요, 즉 별와요를 다시 복치하자는 표현을 썼으나, 복치될 별요는 민수용 기와를 공급하기 위한 본래 취지의 별요(별와요)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와서 소속 와와요) ‘별개의 가마’라는 의미이다.

79)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7월 丙辰 「文廟都監提調諄等啓：“成均館造成材瓦甚多，請別設瓦窯，分遣差役官于各道伐材。…” 傳曰：“可。”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추진한 大慈庵 중창[改創] 역사(『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2월 壬寅)처럼 그 위치상(대자암은 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도성에서 꽤 떨어져 있는 경우, 현지에 요장이 일시 설치되는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80)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6월 甲午 「召瓦窰提調仁山君 洪允成，議圓覺寺法堂所蓋青瓦，凡八萬張，燔造所入甚鉅。」

81)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2월 壬寅 「掌令鄭之夏啓曰：“寫經印經，雖大行王所命，如其非道，則何必盡從？大慈庵改創，雖曰謀諸大臣，如其非理，大臣之言，豈可盡從？… 且臣等，竊聞大慈庵蓋瓦燔造，雖役遊手之徒，然近年，連連失農，豈無糜費？”…」 기와 굽는 일은 ‘遊手之徒’를 부린다고 했지만, 가뜩이나 계속되는 흉년에 佛事に 힘을 쏟는 데 대해 대간을 비롯하여 여러 말들이 있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응답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한다. 설사 일 없는 사람들을 부리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서요의 와장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82) 1475년(성종 6) 영변과 안주에 평안도 지역의 田稅를 운송해 갈무리하는 창고를 지을 때 여기에 동원되는 匠人들에게 한양의 營繕 공사의 예에 의거하여 兩時料를 제공하고, 燔瓦軍들은 瓦署의 예에 따라 一時料를 지급토록 하였다. 여기서 번와군이란 와장을 도와 잡역을 수행하는 瓦署의 조역군과 같은 잡일꾼들일 것이다(『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丁卯 「初輪對者言：“平安道田稅，每年輸于寧邊、安州，而因無倉庫皆露積，令旁郡民，逐年改覆，民弊不貲。… 戶曹據此啓：“安州、寧邊倉庫間數及抄軍募工，鳩材、陶瓦等事，請依觀察使所啓施行，其匠人廩給，依京中營繕例，給兩時料，燔瓦軍依瓦署例，給一時料。”從之。)」.

83) 『성종실록』 권277, 성종 24년 5월 戊子 「御經筵 講訖，… 特進官柳子光對曰：“凡公私賤隸一年身貢，不過二匹，而今正兵二朔之價，多至十五匹，至如赴役瓦署，則雖欲自立，本署奴隸多般侵害，終必代立而後已”

2) 別瓦窯

瓦署의 瓦窯와 같은 관요이면서도 別瓦窯는 민수용 기와를 번조하였다. 한양 재천도 직후인 1406년(태종 6) 태종은, 초가집 일색인 한양 민가가 明 사신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화재에도 취약하므로 별도 가마를 운영하여 기와를 구워 보급하자는 승려 海宣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한양 민가에 저렴한 기와를 보급하기 위한 別瓦窯[別窯]가 설치된 것이다. 고위 朝官을 그 提調와 부제조에 임명하였지만, 실질적인 별와요 운영은 승려 해선이 맡고⁸⁴⁾, 각 도에서 瓦匠 40명과 그들을 도울 승려 270명이 차출, 배치되었다.

기와 구입을 위해 쌀 1백석에 달하는 선불금을 예치하는 이가 있을 정도로 별와요 기와의 수요는 상당했으나, 분명치 않은 이유로 설치 3년 만인 1409년(태종 9)에 혁파되었다⁸⁵⁾. 후에 복구된 別瓦窯는 땔감용 나무로 인한 민폐가 문제되면서 1414년(태종 14)에 다시 폐지되었다가⁸⁶⁾, 1426년(세종 8) 한양에 큰 화재가 발생하자 그 피해 복구에 쓸 기와의 조달을 위해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의 別瓦窯는 瓦署와 달리 40명 瓦匠 인원에 승려를 우선적으로 채우고, 助役人 3백명은 自願人과 지방 승려 중에 뽑아서 옷과 식사를 지급하였다. 瓦署의 瓦匠 정원과 동일하고 조역 인력 역시 비슷하지만, 瓦匠을 승려로 우선 총정하고, 재료흙을 다질 踏泥牛 20마리를 구입해 마련하며, 땔감용 나무는 경기·강원·황해도 船軍을 시켜 한강 상류에서 벌목, 水站船으로 운반해 오도록 하고, 瓦匠과 조역인에 대한 식사,各司의 묵은醬과 司宰監과 義盈庫의 생선, 미역 등의 음식, 담니우 사료용 米豆 등의 지급과 窯場터 마련 등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등으로 官營性이 한층 강화되었다⁸⁷⁾.

별와요의 관영성 강화는 무엇보다도 화재 피해 민가의 복구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으나⁸⁸⁾, 기와값이 비싸고, 1년에 기와 10만여 장을 생산하면서 관수용으로 조달되는 일이 잦아지는 등 본래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가 형편별 우선 순위 판매 등이 대책으로 건의되다가⁸⁹⁾, 1431년(세종 13)에 한양의 동북부와 서남부, 중부에 각각 別瓦窯 1개씩 3개의 別瓦窯를 증설하였다. 別瓦窯 1개당 지방 승려 3백명씩 동원하고, 경기도와 함경·평안도를 뺀 각도에서 땔감도 조달하였다⁹⁰⁾.

84)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己未 「始置別瓦窯 以參知議政府事李膺爲提調, 前典書李士穎·金光寶爲副提調, 僧海宣爲化主 海宣嘗言於國曰: "新都大小人家, 皆蓋以茨, 於上國使臣往來, 瞻視不美, 且火災可畏 若置別窯, 使予掌以燔瓦, 許人人納」

8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12일 壬午 「議政府請勿罷別瓦窯 啓曰: "今以陳言, 罷別瓦窯, 然各人曾納瓦價米百餘石者, 尙未畢受 乞待畢燔瓦而後革去。" 不允」

86)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戊申 「京畿敬差官李陽明復命啓曰; … 然而命罷別瓦窯. 私田收租之弊, 貢鈔收贖之法, 刈草藏水之事, 瓦窯繕工之木, 皆民之所甚病者也」 同 4월 庚戌 「命罷別瓦窯」

87)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2월 癸巳 「戶曹啓: "今失火人家舍及貧窮未能自備蓋瓦者, 請設別窯令燔瓦, 輕價分給, 其事件條列于後. 一, 提調及監役官差定. 一, 瓦匠四十名, 僧人爲先抄定 一, 助役人三百名, 自願人及外方僧人, 刷出給衣糧 僧人則考其赴役日數及勤慢賞職. 一, 踏泥牛二十頭, 以各司鼠損布貨, 許於自願人貿易 一, 燔瓦木, 量宜定數, 每年令京畿, 江原, 黃海道, 當領船軍於漢江上流斫伐, 用水站船輸納. 一, 瓦匠助役人供給及踏泥牛養飼米豆, 初年酌量支給, 自次年以瓦價供給 其醬及魚霍, 以各司陳醬及司宰監, 義盈庫陳魚霍支給. 一, 瓦窯基地, 令漢城府折給, 其餘未備事件, 別窯官吏, 臨時續議以啓。" 從之」

88) 강만길, 1984, 앞의 책, 137쪽.

89)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9월 癸酉.

90)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癸卯 「工曹啓: "今審城中各戶失火延燒之狀, 緣草屋數多, 風亂日未易及救 除在前別窯仍舊外,

증설된 ‘三別窯’는 특별히 일반 평민층의 수요를 위해 설치된 것이었으나⁹¹⁾, 정작 평민층의 기와 수요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2년 만에 기와 재고가 15만여 장에 이르렀고, 공조판서는 평민층 이외에도 판매를 허용토록 건의할 정도였다. 그러나 세종은 別瓦窯가 본시 평민을 위해 설치된 것임을 재확인하며 이듬해 봄 번조를 쉬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지었다⁹²⁾. 하지만 평민의 기와 구매가 계속 지지부진한 가운데 번조용 연료목의 운송과 관련한 민폐가 지적되면서 삼별요는 다시 혁파되었다⁹³⁾. 이후 성종 대에 다시 설치되고⁹⁴⁾ 또 후에 폐지되는 등 별와요의 복구와 폐지가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별와요는 『大典續錄』에 別瓦署로 등재되면서 기와의 구입 자격과 확인 절차, 기와 가격 등이 명확히 법정화되었으나⁹⁵⁾, ‘豪強之人’, ‘豪勢之家’ 등 권세가⁹⁶⁾ 평민 명의를 차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기와를 구매하는 일은 고쳐지지 않았다.

증설 이후에도 別瓦窯는 본래 목적과 달리 구매력 높은 양반층을 대상으로 판매 이익을 도모하는 私窯의 성격이 짙어 갔다. 이에 대한 비판 속에 혁파와 復設이 반복되던 별와요의⁹⁷⁾ 이후 향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603년(선조 36) 특진관 尹洞이, 瓦署 폐지 후 기와 굽는 일을 工曹에 일임시켰다고 한 데서⁹⁸⁾ 瓦署가 임진왜란 즈음에 일단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보면 別瓦窯도 왜란을 계기로 해체했을⁹⁹⁾ 가능성이 높다. 치폐를 거듭하면서도 別瓦窯를 놓지 못하던 정부는 왜란을 계기로 瓦匠의 이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미 명분을 잃은 기구를 되살릴 형편이 못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별와요에 많이 의존

又設三別窯，東北部一窯、西南部一窯、中部一窯，分隸燔瓦，平均分給 軍人則京畿、慶尙道一窯，留後司、忠清、黃海道一窯，平安、全羅、江原道一窯，皆以僧徒，每於一窯，抄送三百名，并給來往料役之 燒木則京畿東西兩界外，量分于各道，每年農隙，斫取雜木，令司宰監船水站船軍船輸之 若其年軍資監造成，斫木當次各道各官，則毋得并定，其至貧者，令都監及漢城府五部審其居計，以禁山松木，量給造家之材，瓦亦官給 各道魚箭，分爲三等，分隸三窯，自願備木納窯者，許令結箭，冒名營利者，論以教旨不從，沒入謀利之物 前此瓦價過重，貧者未易貿易，今設三窯，瓦價比舊減折 其分給蓋瓦之際，受家主告狀，令都監親審幾間，然後給瓦，仍督蓋覆，其未造之家，則造成後，更審間閣給之 人家稠密處，則稍加開廣道路，每戶高築垣牆，接其簷際，使椽端不露，屋上內外厚塗泥土，仍禁柴藩籬。”從之。」

91)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甲辰; 同 권60, 세종 15년 5월 甲子.

9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9월 丙申.

93)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丁未 「命罷諸道水車及五部屬別窯 上書者言: "... 部屬別窯之瓦, 平民得買者少, 而民間輸木之弊甚大, 殊失立法本意." 上即議于政府六曹而罷之」 정치영, 앞의 논문 35쪽.

94) 『中宗實錄』 권40, 중종 15년 8월 21일 丙子 「聽輪對. 都事金友謹啓曰: "成宗朝, 設別瓦署, 欲使城中無草屋. 今可復設."」

95) 『大典續錄』, 工典, 雜令 「別瓦署燔造瓦, 許民和賣, 其價臨時低昂. 令五部, 各其部內草家擲奸, 家主姓名及間閣數開坐, 報漢城府覈實, 移文本署置簿, 每當和賣時, 考置簿許貿易後, 漢城府, 蓋覆形正(形止), 每月擲奸, 如有冒名代受者, 與者受者, 竝治罪. 私瓦一訥價, 以綿布五匹爲准, 違者, 以制書有違律論, 其瓦屬公.»

96) 『성종실록』 권70, 성종 7년 8월 己卯;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8월 壬辰; 同 권75, 중종 28년 7월 乙卯.

97) 1511년(중종 6)에 三司 言官들이 別瓦署를 혁파하고 瓦署로 통합할 것을 잇달아 주장하였다(『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4월 癸卯; 同 5월 庚戌, 癸丑). 이에 대해 중종은 미온적이었으나, 1511년과 1520년 사이 어느 시점에 결국 별와요를 혁파한 것 같다. 1520년(중종 15) 8월 都事 金友謹이 별와요 복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中宗實錄』 권40, 중종 15년 8월 丙子). 김우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실제로 이해 가을에 별와요가 복설되었다. 1533년(중종 28) 7월에 부제학 權輓가, 庚辰年(1520년, 중종 15) 가을에 별와요가 다시 설치되었지만 정작 백성들은 기와를 반조각도 얻지 못하면서 牛隻과 그 사료의 폐해가 크고, 권세 있는 사대부만 기와를 얻어 사치를 부린다니면서 별와요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종은 논의를 의정부로 돌리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중종실록』 권75, 중종 28년 7월 乙卯).

98) 『선조실록』 권164, 선조 36년 7월 丁丑 「... 洞曰: "瓦署廢後, 燔瓦一事, 專責於工曹, 而瓦署所屬甕匠輩, 多屬於司諫院 本曹移文于兵曹, 則兵曹將欲啓請還屬, 而下吏不爲舉行 請令兵曹, 速爲處置何如?"」

99) 강만길, 앞의 책, 140쪽.

하던 한양의 민수용 기와의 조달은 온전히 私窯의 몫으로 되었다.

2. 官 役事에서의 기와 생산과 瓦匠

고려말인 14세기 중·후반에 금강산 장안사 증흥 공사와 개경의 중방 및 도평의사사의 청사 신축에서 瓦匠을 품삯으로 고용하여 기와를 굽게 한 새로운 사례들이 보였지만, 아직은 瓦匠을 부역의 형태로 징발하여 기와를 번조시키는 것이 고려시대 이래의 주된 흐름이었다. 14세기 말 서해도 谷州에 부임한 김승귀는 公館에 부속한 누각을 새로 지으면서, 산에서 재목을 구하고 들판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했다[取材于山 陶瓦于野]¹⁰⁰. 이 과정에서 품삯을 지급하고 이들을 부렸다는 언급은 일절 없거니와, 이는 기록의 누락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군현의 재정상 곡주 주민들과 瓦匠을 부역 징발하여 재목을 벌취하고 기와를 구운 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또 1401년(조선 태종 원년)에 경상도 蔚州를 찾은 안렴사 안노생이 太宗의 장인 민제가 일찍이 당부한 대로 울주에 大和樓를 새로 짓게 했는데, 이때 知蔚州事 손광영의 감독하에 “노는 사람을 모아 재목을 자르고 기와를 구워[乃募遊手。乃斲乃陶]” 한 달도 안 되어 완공했다고 한다¹⁰¹. 이 역시 품삯 고용이나 기와 구입의 흔적은 없다.

중앙에서도 왕과 왕비 등의 사망으로 능묘와 魂殿·殯殿을 조성하는 都監이 조직될 때에는 한양이나 능묘 소재지 인근 경기도 지역의 목수, 석수, 冶匠, 瓦匠들이 부역 동원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조선 후기 의궤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조선 전기에도 비록 당시의 의궤는 전하지 않지만, 왕실 상장례에 따른 도감 역사의 실현 방식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많은 기와를 필요로 했던 것은 山陵都監 役事였다. 조선 후기 산릉도감에서는 丁字閣과 齋室, 曲牆 등의 조영을 위해 造成所, 浮石所, 爐冶所 등과 함께 燔瓦所를 설치하고, 징발한 瓦匠으로 하여금 기와를 직접 번조하게 하였다. 이런 번와소는 1636년(인조 14)의 인열왕후릉 조성 공사를 맡은 산릉도감의 건의에서¹⁰²

100) 『목은문고』 권3, 記, 谷州公館新樓記「… 公館近北。而環以閭閻。賓客之來。無所登覽。如在井中… 乃與吏益拓其地。取材于山。陶瓦于野。閱兩月而斤斧之。功告畢矣…」

101) 『陽村集』 권13, 記類, 大和樓記「… 建文元年己卯春, 今國舅驪興伯閱公壽奉使至此, 觀其南樓已廢, 西亦腐撓, 駐節彷徨, 顧瞻咨嗟, 慨然有新構之志。及還于朝, 未嘗暫忘。越三年辛巳(1401, 태종 원년) 春, 判事安君魯生出按是道, 詣公辭。公語其事, 安君對曰, 敢不敬蚤夜, 新起此樓, 以無忘公勤。既之部, 令行政肅, 乃募遊手, 乃斲乃陶。知州孫君光衍悉力監督。不煩于民, 不月而營。規模制度視舊益壯…」

102) 『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정월 13일 己未「山陵都監啓曰, 山陵丁字閣·齋室等處, 所用瓦甄應入之數, 各項雜物一體磨鍊, 別單開錄, 已爲啓下。自該曹, 令瓦署燔造矣。卽見瓦署所報, 自前山陵時, 都監別設一所燔造, 已成定規, 而今番非如庚午壬申丁字閣齋室仍舊。此應入瓦甄之數, 比前極爲浩大, 以微末殘署, 價物受出, 匠人推掣, 皆未及期。必無趁時燔造之理云, 臣等據此參商, 庚午·壬申年丁字閣齋室, 不爲新造, 應用瓦甄之數不多, 故自瓦署進排。而庚子·戊申年, 都監設燔瓦所云。庚子年瓦署雖未及復立, 而戊申年瓦署復立之後, 亦設燔瓦所云, 必以瓦署物力, 勢難辦出而然也。許多瓦甄殘署獨當, 數月之內, 若未及造完, 則亦甚難處, 依庚子等年例, 自都監別設燔瓦所, 以瓦署官員一員, 監造官差下, 該用材料·牛隻·軍人, 令該曹磨鍊, 使

확인되듯이, 17세기 초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왕조말까지 기와를 번조하였다¹⁰³). 造成所의 목수나 야장, 浮石所의 석수들이 한양의 각 아문·군영 소속 장인들과 한양 거주자, 또는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역 장인들 가운데서 징발된 것처럼¹⁰⁴), 번와소의 瓦匠도 한양과 경기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동원되었을 것이며, 일부는 華城城役에 금위영 소속 瓦匠이 동원되었던 것처럼¹⁰⁵) 군영 소속 瓦匠이 징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瓦罽 瓦匠 조직이 제 기능을 잃지 않았을 조선 전기에도 이런 번와소와 같은 현지 작업장은 운영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부역 징발된 瓦匠들의 작업 시 식사 이외에 일종의 工賃도 지급한 것이 달라진 점이 있었다. 1669년(현종 10)의 安民倉 事目에 따르면, 안민창 공사에 징발된 木手는 한 사람당 매월 價布 2필과 料米 9두씩을 지급받았고, 石手와 冶匠도 목수의 예에 따라 料布를 받은 데 비해, 燔瓦匠은 매월 단위가 아닌, 실제 赴役한 횟수를 따라 料布, 즉 料米와 價布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¹⁰⁶). 여기서 料米란 조선전기 瓦罽의 瓦匠을 포함한 각색 官匠들의 부역시 제공되던 식사이고¹⁰⁷), 價布는 일종의 工價 내지 工賃이었다. 瓦匠을 비롯하여 冶匠, 石手, 木手 등 각색 장인들은 그 역 수행의 일환으로서 官 역사에 징발되지만, 그에 대한 공임 내지 工價로서 價布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들어서면 官 役事에서의 瓦匠 공임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전하는데, 1733년(영조 9)의 全州府 축성 때 瓦匠은 매달 工錢 1兩, 매일 料米 3升씩 지급받았고¹⁰⁸), 1794년(정조 18)~1796년(정조 20)에 진행된 華城 城役에서는 기와와 벽돌을 같이 만드는 瓦壁匠에게 매일 米 3승과 돈 2錢씩이 지급되었다¹⁰⁹).

官 役事に 동원된 瓦匠에 대한 이같은 공임 지급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인식되었다. 1734년(영조 10) 사헌부 지평 李裕身은 상소에서, 可興倉 개건 役事に 부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役糧] 제공은 물론이고, 목수, 瓦匠 등의 장인에게 주는 공임[工價]과 재목

之刻期燔造似當, 摠護使時未出仕, 而料理之事甚急, 惶恐啟啓. 傳曰, 依啓. 料布, 自都監上下. 兵曹膽錄」

103) 종래에는 산릉도감 내 ‘번와소’가 17세기 후반부터 설치되었다고 봤는데(장경희, 2007, 「조선 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王陵丁字閣과 石儀物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124쪽), 위 인열왕후 기사에 따라 17세기 초임부터로 소급해야 할 것이다.

104) 조선 후기를 통해 造成所, 浮石所, 燔瓦所, 爐冶所 등 산릉도감의 여러 작업 소에 동원된 장인들의 匠色과 인원수, 출신지 등에 대해서는, 장경희, 2007, 위의 논문 참조.

105) 1796년(정조 20)에 그 동안 華城城役에 참여했던 牌將 이하 각색장인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금위영 소속의 瓦匠도 있었다(『일성록』 정조 20년 丙辰 9월 11일(癸丑) 「兵曹及各營門以華城城役時牌將以下分等施常啓 … ○禁衛營啓言 謹依華城城役別單 牌將宋仁宅本營加設教鍊官 差定待窠陞實 書吏朴思淳從後收用 本營案付工匠一等木手李光祐 瓦匠徐奉千 各木二疋布一疋 二等木手李三辰木一疋布一疋 三等泥匠洪時太 木鞋匠李彥春 蓋匠李根成 各木一疋分等施賞 ○御營廳啓言…」).

106) 『비변사등록』 28책, 현종 10년 2월 10일 「安民倉事目 一, 南北浦倉舍, 初以八十間磨鍊爲白有如乎, 四月晦前過安興船隻, 使之直納於京中, 則米數當減, 南倉則二十五間, 北倉則十五間, 爲先磨鍊造成爲白齊, 一, … 一, 木手, 初以一百名, 兩朔赴役磨鍊爲白如乎, 亦令斟酌減數赴役爲白乎矣, 每名每朔價布, 各二疋, 料米各九斗, 令戶曹磨鍊題給爲白齊, 一, 石手二十名, 冶匠四名, 一朔赴役次, 依木手例, 料布磨鍊題給爲白乎矣, 燔瓦匠段置, 隨其赴役之數, 料布題給, 以爲速完之地爲白齊, …」

107) 조선전기에 京中の 각색장인은 부역시 하루에 두 끼니[兩時料]를 지급받았다. 앞의 『성종실록』 권53, 성종 6년 3월 18일 丁卯條 참조.

108) 『築城啓草』 燔瓦節次條 「…瓦匠段 隨其所在 移關各邑之赴役 而每朔工錢一兩 每日料米三升式上下…」

109)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용어집』, 335쪽.

구입 비용 등을 종합하여 감영에서 그 비용을 내려 줬음에도, 한양 瓦甍에서 빌려 온 瓦匠의 식사와 공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부들에게 식량을 갖고 부역케 한다든가, 倉役に 쓴다며 민가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 탄 곳에 판다든가, 목수같은 장인도 관내 일반 民人들을 부린다든가 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경우 와장의 공임은 지급된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⁰⁾.

나아가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된 瓦匠들은 당당히 항의하며 이를 바로잡도록 정부에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1901년(광무 5)에 崔致賢 黃益俊 尹禹鼎 等 7인의 燔瓦匠은 內藏院卿을 상대로 올린 訴狀에서, 내장원의 분부대로 개성으로 가서 穆淸殿 役事に 쓸 기와를 번조하였음에도, 당초 몇 번 나누어 工錢을 주던 薛令이 실무자라고 소개했던 金二圭란 자와의 개인적인 負債 관계를 개입시켜 瓦匠들에게 지급할 工錢 9,907량을 서로 미루며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김이규란 자를 즉시 체포하고 그로부터 工錢 9,907량을 바로 받아 내어 瓦匠들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였다¹¹¹⁾. 국가와 瓦匠 모두 瓦匠의 공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 행위이며, 나아가 그런 불법 행위를 바로잡도록 와장들 스스로 나서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110) 『승정원일기』 779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5월 13일 戊子 「持平李裕身疏曰, … 可興倉役時, 稱以材瓦所用, 民家丘木之長養處, 毋論墳山遠近, 一竝亂斫, 計所入用, 以其餘木, 編作二十大筏, 浮下京江, … 況其作筏下江之際, 以民家丘木, 指爲自家丘木, 囑囑提學之言, 尤極鄙陋而渠又做出一家人助給之說, 欲覆其私賣之跡, 其言眞可笑矣。其所謂一家人, 未知指誰, 而私筏之漂失, 雖甚失利, 必不求助於官用之木材。且所謂百餘片吐木, 何足有無於作筏, 而渠又稱之以添補以給乎? 參前考後, 都出巧飾, 而臣則初聞其爲二十大筏矣。臣疏出後, 傳者以爲二十大筏, 臣始以益河供辭中, 吐木筏價低之說較量, 傳者之言二十筏之數, 誠爲信然矣。雖以此一段見之, 渠所以大則狼貪虎攫, 小則鼠竊狗偷, 惟利是求, 無所不爲之狀, 昭著無餘。且其倉役時, 自監營爲其募軍買材, 劃給五百石穀, 而嶺邑稅倉改建之役, 自嶺邑, 依舊例送役價三千兩錢, 彼材瓦所入, 既取民家之丘木, 軍丁赴役, 又有煙戶之調發, 通一邑各面, 每二日使役, 而梅安等, 十三面一萬戶, 則以遠不徵赴, 每戶收納役價錢每五錢, 合爲五千兩, 故是役也, 元無一名募軍, 一株買材, 除其京署借得之瓦匠役糧工價外, 一無所費, 所謂木手, 又爲括出於境內民人, 亦無手直所給, 則今此五百餘石營給之穀, 嶺錢三千兩, 十三面五千兩, 渠用於何處, 而渠所謂通朝所知, 自備新創之財力, 果指何物而稱之乎? 若謂之買材也, 渠則曰斫取於無主空山, 臣則曰奪取於民家丘木, 其兩無所買, 可知矣。若謂之募軍也, 裹糧赴役, 一邑皆然, 遠坊收錢, 萬目所覩, 其毫無自備, 可知矣。…」

111) 『각사등록』 경기도편2, 京畿道各郡訴狀6, 光武 5년(1901) 10월 일 訴狀 「南署瓦署居燔瓦匠 崔致賢 黃益俊 尹禹鼎 等 本人等 이 燔瓦爲業이온바 今番에 本院分付를 伏承하고 穆淸殿役事所用瓦를 造호을 次로 開城府에 下去호은 則李通津과 薛令이 本人等을 招見호옴고 造瓦를 從速盡心호라호오며 金二圭爲名人으로 居間舉行케호옴기 本人等은 惟隨其指揮而應行而已오며 其間에 工錢中, 幾千兩을 流伊覺用호을 時에도 薛令家에서 出給호옴더니 公役을 畢完호은 後에 未下호은 工錢九千九百七兩을 要以出給호은 則李·薛兩宅言內에 金二圭處推用호라호옴기 往言于金哥, 則金哥言內에 是何言也오 曾有所負債於右宅이더니 該條로 相計호고 不給工錢호는 事라호옴기로 復往右宅호야 具言事狀, 則又曰已出給於金二圭云, 而永永納白호오니 世豈有如許人心乎잇가? … (내장원 처분) 金二圭何許悖類, 莫重穆淸殿所用瓦價, 既爲准受價, 而藉托私債, 衆民之工錢, 尙不出給, 致有呈訴之境, 究厥所爲, 極庸駭歎 令到即時, 捉囚金二圭, 該錢九千九百七十兩, 不日督捧, 准數出給瓦工匠等處, 俾無更訴之弊向事。」

IV. 조선시대 私窯의 기와 생산과 瓦匠

1. 官의 기와 수요와 私窯

조선시대 私窯에서 구운 기와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수요를 위한 것이었으나, 관수용 기와를 조달하던 瓦甞가 왜란 이후 瓦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관수용으로도 판매되었다. 瓦甞는 왜란 후인 1608년(선조 41년, 또는 광해군 즉위년) 무렵에 다시 설치되었으나¹¹²⁾, 전시 상황에서 이탈한 瓦匠들을 다시 모아 조선 전기처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왕실과 직결된 궁궐전각 등의 役事에서조차 지방에 대해 징발한 각색 장인들의 상당수가 부역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예컨대 1616년(광해군 8)에 繕修都監은 궁궐 수리를 위해 工匠들을 재촉해 올려보내라는 명령을 수차 내렸음에도 군현 수령들이 이를 흘려듣는다면서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개성은 인구와 물산이 번성한데도 瓦匠과 석수, 畫僧 등 배정받은 수십 명 중 단 한 명도 한양에 올려보내지 않아서 담당 낭청이 처벌되고 있다¹¹³⁾. 2년 뒤인 1618년(광해군 10)에도 營建都監은, 당해년의 기와 수요가 前年の 갑절이 되어 각 도에 배정된 瓦匠들을 즉시 올려보내라고 여러 번 신칙했음에도 당초 배정된 瓦匠 70명 중 절반이 넘는 44명이나 한양에 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각도 감사가 匠人의 유무를 분간치 않고 그냥 각 고을 이름으로만 대강 배정했기 때문이라 하였다¹¹⁴⁾.

이처럼 단 데도 아닌 궁궐전각 役事に 쓸 기와를 위해 시급히 전국을 대상으로 瓦匠을 징발했음에도 당초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 것은, 그만큼 지방 각 군현에서의 수공업 匠人에 대한 파악 자료와 실제 간의 괴리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 최우선 사업인 궁궐 役事도 이러하니, 상설 변화기구로서의 瓦甞가 『경국

112) 1608년에 瓦甞가 복립되었음은, 후술하듯이 1636년(인조 14)에 인조비 인열왕후의 능 조성을 위해 조직된 산릉도감에, 瓦甞의 殘弱한 物力상 많은 기와를 기한 내에 구워낼 수 없다며 燔瓦所 설치를 건의할 때, 瓦甞 복립 이전인 1600년(선조 33)과, 瓦甞가 복립된 1608년(선조 41, 또는 광해군 즉위년)의 燔瓦所 설치를 선례로 들고 있음(『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정월 13일 己未)에서 확인된다. 강만길, 1984, 앞의 책, 140쪽.

113)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01, 광해군 8년 3월 丁亥 「繕修都監啓曰: "國有大役, 工匠催促之令, 不知其幾度, 而外方之臣, 略不動念, 視都監之令, 有若風聲之過耳, 無意舉行, 極爲駭愕 其中開城府卜定瓦匠、石手、畫僧, 通共數十餘名, 而無一名捉送 行文催督, 不啻再三, 至於色吏推捉 而每以一張文報, 稱頃不送 本府以舊都雄府, 人物繁庶, 豈無石匠若干名, 而全然不送, 至於此乎? 況石工則皆是上年付役之人, 因日寒停役, 姑爲遣還, 二月初生, 使之起送矣 至今不爲督送, 尤爲駭愕 請開城府當該郎廳, 爲先罷黜, 以警怠慢之習." 傳曰: "允。"

114) 『광해군일기』[정초본] 권126, 광해군 10년 4월 26일 乙卯 「營建都監啓曰: "今年用瓦之多, 必倍於上年, 故凡各道卜定瓦匠, 及題名推捉之人, 關文到日, 卽爲催送之意, 不啻再三申飭 而目今天早如此, 政爾造瓦之時, 匠人之未到者, 元數七十名內, 四十四名之多 此緣各道監司, 不分匠人有無, 徒以各官邑名, 泛然卜定 因此文報於都監者, 項背相望, 公牒往來之間, 玩愒日月, 過了時節, 極爲駭愕 各道未上來瓦匠數, 別單書進, 請下書於該道, 勿復如前悠泛, 其中分明無眞匠人代立者, 分揀減下, 代以匠人所在之官 各道工房營吏, 一齊率領, 交付于都監, 而或非眞匠, 或一名未到, 則當該營吏, 囚禁于京獄, 監司推考爲當." 傳曰: "依啓 近日都監之啓, 每以催督外方工匠爲重 外方工匠, 雖不可不催促使喚 但在京工匠, 括出赴役事, 傳教累勤, 略不動念舉行 至於私買燔瓦之數, 亦不爲察處, 如此等事, 竝詳察着實議處。"

대전』 당시의 瓦匠 정원을 회복하거나 그에 준하는 인원의 瓦匠을 경상적으로 확보해 운영하기란 심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瓦罽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부족분을 私窯 기와의 구매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었다. 예컨대 1618년(광해군 10)에 30명의 瓦匠들이 연명해서 영건도감에 올린 疏狀에는, 前年(1617년)과 당해년(1618년)에 영건도감이 구매키로 한 총 3백만 장의 기와 중 아직 납품하지 못한 것이 많이 남아서 밤낮없이 굽고 있는데, 기와를 私買하려는 大小人員들이 관청의 위세를 배경으로 와장을 겁박하거나, 옛 빚이라 칭하며 次知를 가두고 독촉하면서 기와를 받아 내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瓦匠들의 하소연이 담겨 있다. 이같은 호소는 이미 국가가 瓦匠들의 私瓦를 구매하여 부족한 기와를 채우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瓦匠들의 민원에 대해 영건도감 측에서도, 瓦匠들과 당초 구매 예약한 기와 물량을 제때 납품받아 두 대궐 전각들과 月廊, 行閣, 각 아문 등에 사용키 위해서는, 수문장과 南部 별장 등이 도감에서 지급하는 章標 유무를 확인케 해서 장표 없는 자는 私買者로 단속하자고 건의하여 광해군의 승인을 얻어 내고 있다¹¹⁵⁾.

官의 기와 수요에 있어서 이와 같은 私瓦의 구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官의 사정에 따라 기와 대금을 면포로 주느냐 쌀로 지급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¹¹⁶⁾, 私瓦 구입은 이미 정부가 기와를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1636년(인조 14)에도 강화도 역사에 쓸 기와 7만 장을 호조의 句管廳이 瓦罽의 私瓦匠으로부터 구매하였고¹¹⁷⁾, 1661년(현종 2) 군자감 창고 공사를 맡은 군자감 참봉 이인석

115) 『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26, 광해군 10년 4월 24일 癸丑 「營建都監啓曰: "昨日臣晚出往外所, 則燔瓦匠人, 三十名, 連名呈狀曰: '上今年都監所買, 中常瓦并一千五百餘訥, 目今未納之數猶多, 今方罔晝夜燔造, 俾免乏絕之患 而大小人員私買者絡繹, 或憑衙門威勢劫買, 或稱舊債因次知督捧, 以此措手不及, 將不得趁時備納, 極爲悶望云 兩關各殿堂, 及月廊、行閣、各衙門等, 節續營建, 用瓦之急如此, 若不別樣禁斷, 必有難繼之弊 依上年例, 南部別將及各門守門將等, 另加申飭, 官瓦載來之人, 則驗以都監章標, 其他私瓦載馱, 無章標人, 一一執捉, 告于都監, 以憑入啓重治 因將此意, 張掛于各處, 曉諭嚴禁爲當 敢啓." 傳曰: "依啓."」, 종래 강만길은 官 역사에 필요한 기와의 구매 사례로 1637년(인조 15)의 강화도의 건축 역사의 예(『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3책) 인조 15년 11월 28일 壬辰)를 들었다(강만길, 앞의 책, 143~144쪽).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시기는 이미 17세기 초로 소급해야 한다.

116)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177, 광해군 14년 5월 己酉 「營建都監啓曰: "… 私瓦貿易, 價米又至三百餘石之多 木布則雖冬深水合之後, 猶可以馬背載運, 米穀則必須以木道輪致, 海路萬全, 又不可知, 此亦可慮 私瓦價木, 本來以綿布出給, 自當初至上年矣 今年始令以米石代給, 瓦匠等皆不願受 依前以木綿准給, 而如不得已, 則三百石內, 一半米石代給, 一半更以木布題給, 宜當." 傳曰: "依啓."」

117) 『승정원일기』 62책 (탈초본 3책) 인조 15년 12월 1일 乙未 「金光煜, 以戶曹言啓曰, 以本曹句管廳材瓦去處草記, 傳曰, 查問于詳知軍官, 知數以啓事, 傳教矣. 問于次知軍官朴時茂, 則說稱江都 <缺...> 上次材竝三萬餘介價木, 下送于江原道, 二萬七千介<缺>運置<缺>未及運送, 江都之前<缺>材椽竝三千介, 山陵國葬都監, 貸用, 其代材椽, 則分定於忠清·黃海兩道, 直運江都, 而江都所捧之數, 則未能知之. 其餘京江所在材椽及瓦署私瓦匠處, 本廳給價所買七十訥, 上年秋欲爲下送, 而無船隻, 趁未載運, 仍值合水, 且遇兵亂, 還都後京江所置材椽收拾, 則材木七百十條, 椽木三十八條, 卽爲置簿于戶曹, 瓦子七十訥, 則時無用下之處, 問于其時逢授人, 則有無可知. 上項材木, 江都所捧及江原道未收數, 京江餘在實數, 則其時文書蕩失, 不能記憶云. 江華所在材木, 則問于本府, 瓦子, 則其時分授瓦匠, 捉致推問之意, 敢啓. 傳曰, 問于京外, 一一推尋後啓之, 可也」 이때 기와 70늘을 구관청에 판매한 瓦罽 私瓦匠에 대해, 강만길은 정부와 사영제와장과의 중간에서 사영제와장의 상품을 정부에 납품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강만길, 앞의 책, 143~144쪽).

도 공사에 쓸 기와를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¹¹⁸⁾.

사실 瓦匠이 태부족한 17세기 중반 瓦甬의 기와 생산력은 이미 미약하였고¹¹⁹⁾, 1658년(효종 9)에는 급기야 瓦甬에 『경국대전』에서 정해 놓은 40명의 官瓦匠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서 서너 명[數三]의 私匠을 雇立하여 기와를 구웠으나, 그조차 매번 상위 관사가 침해하여 일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¹²⁰⁾. 이런 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서 1677년(숙종 3)에도 본래의 官瓦匠은 거의 죽고 단 1명만 남아 있어서, 매번 기와를 구워야 할 때에는 私匠, 즉 민간 瓦匠을 빌려서 대신 부려야 했다¹²¹⁾. 이처럼 17세기 이후 瓦甬에 瓦匠이 부족 내지 부재한 가운데 소수의 민간 瓦匠이 瓦甬에 고용되어 기와 번조를 맡는 상황에서, 官이 필요한 다량의 기와를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굳어져 갔던 것이다.

나아가 18세기에는 정부가 瓦匠들에게 기와값을 미리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와를 만들어 납품하게 하고 있다. 1724년(영조 즉위년) 12월 추위에 즈음하여 석방된 죄수들 중에는 燔瓦所 手本에 따라 曲墻의 기와를 즉시 ‘進排’하지 못한 죄로 갇혀 있던 瓦匠 부인들도 있었다¹²²⁾. 남편들을 대신하여 그 부인들이 죄수가 된 것인데, 남편인 瓦匠들은 ‘진배’에 앞서 기와값을 미리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1749년(영조 25) 瓦甬에서 大瓦를 미리 번조해 비치해 두지 않고 그때그때 給價하여 진배토록 하기 때문에 종묘와 궁궐 등지를 수리할 때마다 常瓦로 급히 바치는 한심한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¹²³⁾. 瓦甬에게 기와값을 지급받는 이들 瓦匠의 모습은 당시에 각종 관수 물품들을 납품하던 賈人들의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118) 『승정원일기』 168책 (탈초본 9책) 현종 2년 5월 18일 丙寅 「本監參奉李仁碩, 不役<二字缺>一名, 多般拮据, 別樣料理, 給價募得遊手起役, 而十日之內, 畢築七十餘間之墻垣, 又爲買瓦, 蓋覆三間之庫, 亦且造成云. 發遣本曹郎廳, 摘奸其形止, 則墻垣庫間, 俱極完固, 使久遠頽圯之地, 得成官家貌樣, 以防偷竊之患, 以除守直霧積之弊, 其盡心職事之誠, 極爲可嘉. 令該曹考例施賞, 以爲激勸他司之地, 何如? 傳曰, 允。」

119) 『승정원일기』 51책, 인조 14년 정월 13일 己未 「山陵都監啓曰, … 許多瓦甬殘署獨當, 數月之內, 若未及造完, 則亦甚難處, 依庚子等年例, 自都監別設燔瓦所, 以瓦甬官員一員, 監造官差下, 該用材料·牛隻·軍人, 令該曹磨鍊, 使之刻期燔造似當, … 傳曰, 依啓。」

120) 『승정원일기』 152책 (탈초본 8책) 효종 9년 9월 25일 己未 「入診時, 都承旨洪重善所啓, <二字缺> 殘弊, 比他司最甚, 而本署素無所屬匠人, 只得兵曹所給若干價布, 雇立數三私匠, 而每爲上司所侵, 多有停役之時, 以致國用不足, 誠爲可悶. 本署舊案相考, 則案付官匠, 至四十名之多, 而爲給保率, 輪回燔造矣. 即今雖難依數充定, 無身役可合匠人, 自本署, 隨所得續續啓下, 定屬本署, 且使之自得閑丁, 保率定給, 以爲永久應役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121) 『승정원일기』 261책(탈초본 13책) 숙종 3년 8월 25일 己巳 「晝講入侍時, 特進官吳始復所啓, 瓦甬燔瓦之役, 本來浩大, 而本署瓦匠, 幾盡死亡, 即今見存, 只有一名, 每當燔瓦之時, 借使私匠, 事甚苟簡. 考見大典, 則本署瓦匠, 元數四十. 今雖不可猝然盡數充定, 限以二十名, 自本署充定, 報于上曹, 啓下之後, 其中如有私賤, 則依尙衣·工曹匠人例, 代給寺奴何如? 上曰, 本署瓦匠, 只有一名, 則事甚苟簡, 依此爲之. …」

122) 『승정원일기』 581책 (탈초본 31책) 영조 즉위년 12월 1일 庚午 「崔宗周書啓, 臣承命馳往于典獄署, 點閱罪囚, 則承傳罪人九名, 刑曹罪人三十六名, 咀呪罪人八名, … 瓦匠牟貴英正妻善今, 梁壬戌正妻禮業, 張世英正妻介也之, 李廷必母次禮, 高愨古里正妻愛春, 吳萬起等段, 燔瓦所手本據曲墻蓋瓦, 不即進排事也. 吳景札與趙召史交奸事也. … 俱不至大段, 故臣仰體聖上當寒恤囚之德意, 竝爲放釋. … 傳曰, 依啓。」

123) 『승정원일기』 1042책 (탈초본 57책) 영조 25년 4월 12일 己丑 「申時, 上御歡慶殿. 召對, … 出學條 (호조판서 朴)文秀曰, 瓦甬大瓦方甬等物, 不爲預燔, 臨時給價使之進排, 非但策應之窘急, 雖以大瓦一種言之, 既不預備, 故每當宗廟宮闕諸處修改之役, 輒以常瓦臨急進排, 事之寒心, 莫此爲甚. …」

관수용 기와를 私瓦 구매로 조달하는 것은 瓦署의 瓦匠 부족 내지 부재의 영향을 받던 중앙의 사정만은 아니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 건국 후에도 瓦匠의 역 징발을 통해 기와를 조달하던 지방의 官 役事에서도 이미 임진왜란 전부터 私瓦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584년(선조 17)에 강원도 관찰사 鄭崐壽의 뜻으로 고성 군수가 삼일포 四仙亭을 중수할 때 기와는 구입해 사용하였고¹²⁴⁾, 왜란 이후인 1624년(인조 2)에 成歡道 찰방 申達道가 흩어져 있던 노비들을 불러 모아 터를 정비하고 재목을 모아 성환역의 官舍[成歡郵館]를 중건할 때에도 기와는 구매해서 사용하였으며¹²⁵⁾, 1690년(숙종 16) 강화유수 申厚載가 폐사찰의 중수와 關防의 목적을 겸한 사찰을 문수산 맞은편에 지을 때에도, 僧公명첩을 발행하여 마련한 경비로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매해서[鳩材買瓦] 이듬해에 완공하고 있다¹²⁶⁾. 뿐만 아니라 1792(정조 16)에 평안감사 洪良浩의 평양 奮武臺 중수¹²⁷⁾, 1848년(헌종 14) 江華府의 廣城堡按海樓 8칸의 지붕 기와 교체¹²⁸⁾, 1849년(헌종 15) 제주도의 관아 청사 보수¹²⁹⁾, 1855년(철종 6) 강화부의 행궁·내당고를 비롯한 다수 건물의 수리¹³⁰⁾ 등 임진왜란 직전부터 사실상 조선 후기 전 시기에 걸쳐 지방의 官 役事에서 기와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민간의 기와 수요와 瓦匠

瓦匠의 私窯에서 생산한 완성품 기와는 위와 같이 일부 官 수요를 위해 판매되기도 했지만, 역시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수요에 가장 보편적으로 부응하였다. 조선시대에 瓦匠의 私窯는 수도인 한양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양은 기와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곳인 데다가, 조선 전

124) 『栢谷先生集』 권1, 記, 三日浦四仙亭重新記 「…腐黑撓折, 陋不可居, 其不稱甚矣。余謂郡守金侯曰, 此地不可無此亭, 而亭之兼沒如此, 吾爲郡恥之, 盍新諸。侯應曰, 敢不惟命, 愚見亦然。卽鳩材買瓦, 開基於季夏, 閱月而告訖。」

125) 『晚悟先生文集』 권9, 연보, 皇明熹宗天啓 4년 甲子 「先生四十九歲 …重建成歡郵館。<郵館荒廢多年。先生至之日, 招集散隸, 恢濬遺址, 鳩材買瓦, 始役五十日而成。>」

126) 『葵亭集』 권7, 記, 伏波樓記 「余不佞留後是邦之逾月, 而有以廢刹重修, 募緣請者二。余謂此於關防無益, 併二寺重修之力而創寺於正與文殊山相對者, 緩急當有所賴。聞于朝, 廟議是之。遂以僧帖之空名, 鳩材買瓦。役遊手若而人。始自庚午六月, 至辛未春而工告訖。」

127) 『耳溪集』 권12, 記, 奮武臺重修記 「…余於辛亥 仗節西來。… 粵明年四月, 乃鳩材買瓦, 卜日始事。令幕僚前府使尹壽民, 董其役, 匠三旬而功訖。翼然而華, 瓌然而壯。邑之父老, 扶杖垂白而來胥, 嚶嚶咨嗟而稱曰, 箕城之有此臺, 猶舟之有帆, 車之有旂。爲萬人所屬目者。百年以來, 廢而不顧, 今焉復舊觀而增其麗, 民不知役而樂其成, 公之功。…」

128) 『각사등록』 4, 경기도편4, 江華府留營狀啓謄錄 1, 道光28년<戊申> 3월 일 「承政院開坼 本府鼎足山城濬源閣修改後, 所屬紅箭門, 南門樓, 及廣城堡, 按海樓頽圯處, 次第修改 … 樓閣之傾仄者, 仍舊修葺, 一新改瓦, … 謹考本府已例, 大小事役, 竝皆雇募, 不煩丁夫, 賣出於仰體朝家重民力之意乙仍于, 今番段置, 工匠募軍, 竝給價使役, … 後 役處秩 濬源閣九間一新修改。中門三間修改。丹腹。… 廣城堡按海樓八間一新修葺改瓦。… 買瓦運瓦監官教鍊官僉正金禮源。…」

129) 『각사등록』 19, 전라도편2, 濟州啓錄 1, 道光 29년 5월 29일 「…挽近以來, 廡舍之東頽西圯, 左支右撐, 急時修改處, 非止一二。此外已毀年久者, 不改不建, … 廡舍段置, 廣買瓦材, 旋卽經紀, 始於三月, 至于五月, 而次第告訖, …」

130) 『각사등록』 4, 경기도편4, 江華府留營狀啓謄錄 1, 咸豐 5년 9월 30일 「承政院開坼 本府行宮與內帑庫及諸處去七月十五日修改始役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第此營作之舉, 適值農務之時, 雖一日之役, 若責赴民丁, 則必致騷擾之慮 故臣多般拮据, 役徒則雇用, 材瓦則求買, 不煩不擾, 各別董飭, 至本月三十日, 次第告訖是白如乎, … 買瓦伐木鐵物監官出身朴熙景。…」

기에 민수용 기와를 공급토록 운영된 별와요가 혁파와 복설이 빈번하였고, 그나마 거기서 생산된 기와의 구입 자격도 원칙적으로 양반이 아닌 일반 평민층에 한정된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 평민들보다 훨씬 구매력 있는 양반층이 필요로 한 기와는 별와요가 아닌 민간 瓦匠의 私窯에서 생산한 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민간 수요에서 차지하는 私窯의 경제적 비중은, 별와요 설치 3년 후인 1409년(태종 9) 흉년에 즈음하여 儉約의 의미로公私 瓦窯를 일시 금한 일이라든지¹³¹⁾, 1459년(세조 5) 私窯 기와도 일정한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 官에 몰수하도록 조치한 것¹³²⁾ 등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448년(세종 30)에 별와요에 부여하던 승려들이 역의 과중함을 호소하자 세종이 별와요 혁파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신료들 모두가 별와요를 갑자기 폐지하면 私窯의 기와값이 비싸진다고 반대한 사실에서도¹³³⁾ 私窯가 별와요 못지않게 민간 수요용 기와의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⁴⁾.

한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에서도 개인이나 특정 조직 차원의 민간수요가 있어서 私窯 기와가 매매되었다. 퇴계 이황의 문인 權好文(1532~1587)의 조카가 1569년(선조 2) 숙부 권호문을 위한 작은 집을 짓고 이듬해 봄에 기와를 구매하여 지붕을 덮은 일¹³⁵⁾, 17세기 초 소수서원 院任 郭嶠(1568~1633)이 기와를 사들여 池臺의 지붕을 덮은 일¹³⁶⁾, 18세기 중반 1750년(영조 26)부터 3년에 걸쳐 학자 百弗菴 崔興遠(1705~1786)이 집의 사당 가까이 제사 음식 마련 등을 위한 건물[報本堂]을 지으면서 기와를 구입한 일¹³⁷⁾, 의성 지역 선비들이 1800년(순조 즉위년) 10월, 講學 시설인 三一齋를 중수하면서 地主 徐아무개의 비용

13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12일 壬午 「前東北面都巡問使李之源進便民事宜 其書曰 … 一, 遷都之初, 土木之役, 雖不得已, 然古者有以茅茨土階, 君臨萬方, 則雖上以宮闕, 當待以豐年, 儉素營造, 以厚民生 況於私家, 不計年凶, 競爲華麗, 起怨傷和? 其營造之資, 雖曰出於私財私奴, 然私奴乃國民也, 私財乃國財也 公私瓦窯土木之役, 乞限豐年一禁. …」

132)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8월 甲寅 「司憲府啓禁令可行條件: 一, 市肆令該曹量宜分地, 使不得亂雜, 以杜欺罔. … 一, 私窯燔瓦, 造作不如法者, 本府及漢城府檢察論罪, 其瓦沒官. …」. 세조 때의 이 조치는 『경국대전』에도 반영되었는데, 법을 위반한 私窯의 기와 槩木에 工曹가 낙인을 찍어 표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경국대전』 工典, 雜令 「造瓦濫惡不如法者, 重論. 私窯, 則論罪後, 本瓦沒官, 槩木, 本曹烙着標.」). 『경국대전』의 이 문구는 『대전통편』에까지 변동 없이 이어졌다.

133)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9월 22일 乙巳 「… 上又曰: "別窯之設, 起於遷都之初, 不久而廢 厥後有吳信仁者請復別窯, 然實惠少而所貸官物, 頗多耗損, 太宗命罷之 逮至丙午, 火災之後, 禁火之議出, 而復設別窯 近日別窯赴役僧擊鍾訴冤, 予欲罷之, 何如?" 僉曰: "即今京城人家, 太平皆瓦, 別窯之功居多, 而不關國家經費 且年年造家者相繼, 一朝革別窯, 則私窯瓦價增貴, 而造家者必難得也 臣等以爲自此除春秋兩等礮瓦, 止於春節燔造." 從之。」

134) 정치영, 앞의 논문, 34쪽.

135) 『松巖集』 권5, 記, 觀物堂記 「去己巳姪子道可幹家事, 財力稍優, 乃欲成余之志. 秋七月, 乘農之歇, 命匠聚材, 起小堂於松巖之西偏, 閱四莫而功訖. 余適是年, 久在京師. 十一月, 歸見簷楹之巋然高峙, 其制度, 雖不愜余心, 其勢寬豁, 可償宿尚矣. 越明年春, 買瓦而蓋, 買版而粧, 半爲煨室, 半爲涼軒, 隈壁而藏書, 虛前而繞欄, 翛然宜騷子之攸芋. 余乃名其齋曰「觀我」, 堂曰「執競」, 而退陶先生以觀物改之, 仍名焉。」

136) 『丹谷集』 권3, 書, 上蒼石 「…白雲院任. 初愧扛夯, 而尙今未能釋負. 諸生之自遠方來者, 視昔稍盛, 戶外之屨常滿, 絃誦之聲不絕. 但靠裏鞭策者幾希, 而多是燕許楊劉之餘習, 是可惜也. 小齋池臺, 餘馥尚存, 深恐不敏冒管, 歸於中廢. 春初買瓦以蓋之, 斲板而鋪之. 臺之南北築矮牆, 牆下植萳菊. 冠童之遊詠於斯者, 每值風和月明之夕, 想仰先生灑落之趣, 相與敬歎而已。」

137) 『百弗菴集』 권4, 書, 與李景文別紙 癸酉 「…先君棄不肖. …喪畢. 以祧主奉安. 別置祭田, 春秋祭之. 後數年, 又立數間屋於廟南十步許, 以爲庖廚庫藏之屬, 而行祭齊宿之所, 力綿久未就, 庚午冬, 始鳩材買瓦, 命匠舉事, 三季乃成. …亦名其堂曰報本。」

지원을 받아 기와를 구입하여 이듬해 완공한 일¹³⁸⁾, 그리고 1891년(고종 28) 9월 13일 分院貢所의 下掌으로서 회계와 문서 작성, 자기의 진상과 판매 관리 등 都中의 핵심 실무를 관장하던 池圭植이¹³⁹⁾ 都中의 방침에 따라¹⁴⁰⁾ 貢人 卞柱憲에게 기와 대금 8백량을 주어 龍山에 가서 기와 2우리(訥), 즉 2천 장을 구입하게 시킨 일¹⁴¹⁾ 등은 모두 민간의 개인이나 특정 조직이 私窯 기와를 구매한 사례들인 것이다¹⁴²⁾.

위 19세기 말 지규식의 사례에서 楊根의 분원공소가 용산 瓦匠들로부터 기와를 구입해 올 때 선박을 전세 낸¹⁴³⁾ 것으로 보아 구입한 기와를 배에 싣고 한강 수로를 거슬러 남한강변의 분원공소 앞까지 운송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수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량의 기와라도 원거리 운송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였다. 武官 생활을 마치고 고향 善山에 퇴거해 있던 盧尙樞(1746~1829)는 1822년(순조 22)에 구미 大菴寺 부근에서 기와 구매차 한양으로 가는 선비 趙述堯를¹⁴⁴⁾ 만나서 노자를 보태 주었는데¹⁴⁵⁾, 조술요는 낙동강 수로를 통해 인근 場市의 항구에 출입하던 商船을¹⁴⁶⁾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편 瓦匠의 私窯 활동에는 완성품 기와의 생산·판매 외에 건축 공사 현지에서의 燔瓦도 있었다. 기묘사화 때 간신히 화를 면하고 이천에 은거하던 金安國은 1532년(중종 27)에 다시 등용된 후 한양 집에 공사를 하면서 瓦匠과 마주앉아 土木價, 役人價, 匠人手功價, 輸入價 등을 하나하나 따지며 협상을 했다. 마침

138) 『晦屏集』 권7, 記, 三一齋重修記「… 鄉者齋宇之傾圮, 蓋有年矣. 吾友上舍金宗憲景徵父時爲齋長, 以吾族子鼎周爲貳. 上舍一鄉之善士也, 老成有宿望. 鼎周亦有文雅, 固已合志同方, 隨事盡力. 惟勿替舊規是務, 而顧瞻棟宇, 愴然興吁. 特以重脩革新爲急, 入告于地主徐公, 徐公賢大夫也, 聞而樂之, 爲募百緡銅以助之. 鳩材買瓦, 革舊改建, 堂室廊舍, 燦然一新. 以歲庚申孟冬始事, 辛酉季春告訖…」

139) 박은숙, 2008, 「개항 후 分院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 -荷齋日記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2, 韓國史研究會, 278쪽.

140) 『荷齋日記』 辛卯年 9월 13일 「晴… 日暮下來 卞柱憲上來 有都中書買瓦二律爲托 黃昏 許昌順上來 有都中書 內出器皿上來 又有英雄正權之書 各有所請」

141) 『하재일기』 辛卯年 9월 14일 「晴… 買瓦次八百兩 卞柱憲備給 表文寬處五百兩上 崔基貞處今晦音一千兩上 李京必 下去次訪我來云 而適相違未逢 柱憲買瓦次出龍山…」

142) 分院貢所는 陶土 비용과 匠人급여, 점심미, 가마개보수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分院 시절과 달리 그 운영권이 이미 貢人들에게 이양된 조직이어서 여기서는 민간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분원공소의 운영과 시장판매의 실상에 대해서는 박은숙, 앞의 논문, 275~291쪽 참조.

143) 『하재일기』 癸巳年 7월 2일 「晴… 買瓦次 使春伯專船上送於呂州…」

144) 조술요는 1809년(순조 9)에 鄭述와 張顯光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경상도 유생의 상소에 이름을 올리고(『승정원일기』 1965책 (탈초본 103책) 순조 9년 4월 10일 己亥), 1814년(순조 14)에 南冥 曹植의 문묘종사를 건의하는 팔도 유생의 상소문에 幼學 신분으로 이름을 올린 같은 이름자의 조술요(『승정원일기』 2047책 (탈초본 106책) 순조 14년 6월 22일 辛巳)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145)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2년 壬午日記, 3월大 19일 甲子 「陽而風. 是午, … 行墓祀于雪庵後, 曾外祖母商山金氏墓, 因下山路逢趙述堯求買瓦子行也. 爲壁琬京行路資, 賣一訥許之, …」. 이날에 앞서 며칠간 노상추는 竹月軒에 기와 덮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같은 책, 12일 丁巳~16일 辛酉). 따라서 이 날짜 일기의 구절은 이 공사를 마친 후에 남아 있던 기와 1천 장을 급히 팔아서 그 대금을 노자로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文言상으로는 길에서 만난 조술요에게 (일단 여정을 멈추게 한 다음) 집에 있는 기와를 팔아서 그 대금을 노자로 건넨 것이지만, 여행자를 기다리게 하고 갑작스레 기와를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는, 조술요가 한양에서 구매하려는 기와 중에 1천 장 정도를 노상추 자신이 가진 기와로 대체하고 기와 대금은 받지 않는 방식으로 조술요의 노자에 보탬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146)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1일 乙丑 「陰雨午乍歇, 洛東商船, 盡入場市港口」. 노상추가 말하는, 장삿배가 드나드는 낙동강변 場市는 선산에 바로 인접한 開寧縣 梨水川의 장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와 같은 해 4월에 노상추는 절뚝거리는 말 다리의 치료를 위해 奴 崔三으로 하여금 이곳 개령현 이수천 장시에 말을 데려가게 했다(『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4월大 초1일 丙午 「陰. 奴崔三, 以蹇馬治病次, 牽往開寧梨水川市邊」.

찾아와 수인사만 나누고 기다리던 재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벼릴 정도로¹⁴⁷⁾ 김안국은 瓦匠과 양보없는 협상에 몰두했던 셈인데, 이때 土木價는 기와 번조에 필요한 땀값 비용이고¹⁴⁸⁾, 役人價는 기와 재료흙을 굴취하여 瓦幕으로 옮겨서 이기는 일¹⁴⁹⁾ 등 기와 번조 과정의 일체 잡역을 담당하는 인부들의 품삯일 것이며, 匠人手功價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수행할 당사자로서 현재 김안국과 협상 중인 瓦匠에 대한 工賃일 것이다. 또 輸入價는 번조된 기와를 건축 지점으로 옮기는 품삯일 것이다.

양반사대부들이 집을 지으면서 기와 번조를 병행할 때는 1576년(선조 9) 柳希春의 客廳 공사에서 보듯이 정평 있는 瓦匠을 선택하여 면담을 하고 위 김안국의 예와 같은 비용 협상은 물론이고, 가마 규모나 진행 일정 등을 협의한 후에 瓦幕 설치¹⁵⁰⁾ 시작으로 기와 번조 공정을 수행하였다. 담양의 유희춘 객청 공사에는 담양에 거주하는 徐漢弼이라는 瓦匠이 추천되었고¹⁵¹⁾, 1827년(순조 27) 경상도 선산 거주 盧尙樞는 다소 먼 義城에 사는 손씨 성의 瓦匠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¹⁵²⁾. 유희춘의 경우와 달리, 노상추는 하루 생활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의성 지역의 瓦匠을 초빙하기도 했던 것인데, 이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고려시대에 개경 瓦匠 莫志가 한반도 남단의 장흥에까지 초빙된 예에 비추어 보면, 노상추와 의성 瓦匠의 경우를 심히 이례적이라고만 하기도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조선 후기에도 향촌 사회의 기와 주문이나 작업 의뢰가 썩 흔한 일은 아니었던 만큼 瓦匠들은 기와일을 하지 않는 시기에 별도의 생업에 종사해야 했고, 대부분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1827년(순조 27) 봄부터 진행된 새 거처 큰방 신축 공사의¹⁵³⁾ 일환으로 5월에 노상추를 뵈러 온 瓦匠들은 노상추와의 대화에서 가을보리는 이미 추수가 끝났고 봄보리는 이제 막 베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⁴⁾. 瓦匠의 이런 얘기는 이들이 평상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는 노상추가 농사 진행 상황을 인사 겸해

147) 『海東野言』 3 「金二相安國國卿齋募…及還朝也, 家有成造, 方與瓦工計功定價。一宰相往謁, 揖升絃阻, 卽與瓦工數計土木價幾, 役人價幾, 匠人手功價幾, 輸入價幾, 未畢, 宰相辭去。族人規之曰, 宰相來見, 不與敘話, 而執他務可乎。二相曰吾之所以爲此, 非但爲己, 乃爲一國通用之例。若金安國見誑於瓦工, 則一國寡婦貧士, 將無以買瓦而用之。適吾有事, 宰相適來, 奈何奈何。」

148) 기와번조용 땀값은 公私 기록에서, 瓦窯柴木(『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5월 26일 戊戌), 瓦窯燒木(『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3일 甲申), 瓦窯納吐木(『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1월 11일 乙卯), 吐木(『문종실록』 권7, 문종 1년 5월 癸亥), 瓦窯土木(『미암일기초』 丙子年 3월 22일), 瓦土木(『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3일), 燔瓦木(『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 6월 癸酉; 『미암일기초』 乙亥年 10월 30일), 燔瓦材(『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10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149) 『미암일기초』 丙子年 1월 26일, 「…以掘埴打埴椽木輪轉三軍人事 通簡于府伯(李仲虎)…」

150) 『미암일기초』 병자년 2월 3일 「朝李貞秀來言 瓦窯當作二窟 一則今當新造 令容二訥云…」 『미암일기초』 병자년 1월 26일 「…瓦工六人 始造瓦幕于大島洞…」

151) 『미암일기초』 丙子年 1월 21일 「申鴻在南原梁牧使艤墓所通簡云 瓦工之良者 潭陽棘洞徐漢弼云; 同 25일 「(전략) 瓦工徐漢弼來謁 曾造李邦柱之瓦 手品完好 故余得任爲喜」

152)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7월 6일 己酉 「陽. 義城允意谷瓦工孫生來宿.」 瓦工 孫生과 노상추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일기에 전하지 않지만, 일개 기와 장인이 양반댁을 찾아와 숙박한 것을 단순한 과객의 사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53)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3월 6일 丙申 「陽. 晚余作白蓮之行, 到大菴寺, 僧徒供糲以進之. 上山拜墓, 下新庵, 木手僧有添率四名, 木手僧一俗三, 十三日始以伐木, 十九日始治木, 此是新庵大房之經紀也.」

154)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5월 小 27일 壬寅 「陽. …暮 瓦工四名來現, 卽聞秋牟已收畢, 春牟則方始刈云.」

서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이었을 것이다. 다음달인 윤5월 20일에 홍수가 우려될 만큼의 큰비가 와서 마침 瓦匠들이 만들어 놓았던 가마를 무너뜨리자¹⁵⁵⁾, 瓦匠은 큰비 온 뒤에 다시 가마를 만들어도 흙이 마르기까지 날짜를 허송하며 양식만 낭비하게 되니, 차라리 작업을 중단했다가 7월에 다시 시작하자고 건의하여 건축주 노상추의 동의를 얻고 있다¹⁵⁶⁾. 瓦匠이 7월까지 번와 일정을 미루려 한 것은 농사를 겸하던 이들이 모내기 이후의 바쁜 농사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주와 협의를 끝낸 瓦匠은 瓦幕¹⁵⁷⁾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瓦幕의 핵심인 가마는 기와 번조가 끝난 후 대체로 폐기했으나, 그대로 두었다가 몇 년 뒤 아무런 기능상의 손색없이 재사용하기도 하였다¹⁵⁸⁾. 채취해 온 진흙을 성형하기에 좋은 상태로 반죽하고 이기는 과정에는 중앙의 別瓦窯나 燔瓦所의 경우 국가에서 踏泥牛를 마련하여 제공하였는데¹⁵⁹⁾, 18세기 전반 경북 선산의 노상추家처럼 민간의 건축 공사에서도 건축주 측에서 瓦匠과 함께 지역 場市에 동행하여 踏泥牛를 구입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¹⁶⁰⁾. 瓦匠이 건축주 측 사람과 함께 답니우를 구매하려 갔다는 것은 답니우로 부릴 만한 소를 외양으로 선별할 수 있는 瓦匠의 안목이 필요해서일 것이며, 그 구입 비용은 건축주인 노상추가 부담했을 것이다. 이런 노상추가 예로 보면, 답니우가 향촌 瓦匠의 기와 성형 공정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게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성형 공정을 거친 기와는 가마에 투입하여 번조하는데, 이 때 쓸 땀감은 官이나 민간의 役事를 막론하고 그 비용 부담이 컸다. 관수용 기와를 굽던 瓦窯에 사용할 땀감은 대표적인 민폐 중의 하나여서¹⁶¹⁾, 예외적으로 防納을 허용할 정도였다¹⁶²⁾. 민간의 私窯에서도 땀감 마련은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지, 태종대에 한 관원은 군기시에서 철 주조에 쓰고 남은 땀감[燒木] 4,500근을 가지고 나와 기와 굽는 데 私用하여 사헌부가 이를 請罪하였다¹⁶³⁾. 해당 관원은 자신의 私的 건축공사에 민간 瓦匠을 불러 기와를 번조케 하면서 군기시 관물을 빼돌려 그 땀감으로 썼던 것이다.

155)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0일 甲子 「陰雨終日注下, 是爲大雨. 江水則入于洛東津頭籬下, 雨勢不止, 大水可慮. 瓦工等所掘瓦窟自崩, …」

156)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3일 丁卯 「陽. 洛東籬下, 沙場始出, 水落可占. 都瓦工, 告以大雨之餘, 更掘瓦窟, 則土乾爲之, 日子虛送是悶. 浪費糧米切迫, 停役以待七月更始何如云, 故許之.」

157) 瓦幕은 가마를 비롯해서, 瓦匠들이 거처하며 흙을 이기고 성형하여 기와를 굽는 시설과 공간 일체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158)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3년 癸未日記, 4월小, 25일 甲子 「陽. 是日升燔留. 是朝出更燔瓦, 置窟三年後更燔而盡熟, 可用可佳 …」

159) 『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2월 癸巳; 『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03, 광해군 8년 5월 壬申.

160)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초2일 丙午 「夕都瓦匠與一工來現云, 玉與瓦工一人, 往尙州邑市, 買牛暮來, 卽踏泥牛也.」

161)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戊申 「京畿敬差官李陽明復命啓曰: 臣承重命, 恐不能堪, 奔馳坵甸, 廣咨博訪, 及于庶民, 生民之病, 固不多矣. 然而私田收租之弊, 貢鈔收贖之法, 刈草藏冰之事, 瓦窟繕工之木, 皆民之所甚病者也.」

162) 『세종실록』 권87, 세종 21년 11월 乙卯 「判中樞院事安純上書曰: … 各官貢物防納之禁, 著在令甲. 然慮民之力, 繕工監納木炭, 瓦窟納吐木, 許令防納. 緣此其他雜貢, 通同守令, 無不代納, 收價民戶, 甚者令民輸價于京中, 而給與物主, 至於各站各渡, 代納一船之價, 幾至百餘石. 終歲勤苦之業, 費用如沙, 其弊三也.」

16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甲午 「司憲府請…政府舍人鄭村及軍器寺官金成美, 崔海山, 崔自海等罪. … 村前爲軍器副正, 將鑄鐵用餘燒木四千五百斤, 托言還充, 而私以燔瓦, 成美, 海山, 自海等聽從其請故也.」

민간의 건축 공사에서 이처럼 땔감을 건축주 쪽에서 미리 확보해 두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분량을 사회 관계망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¹⁶⁴⁾ 瓦匠에 대한 보수 산정 시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瓦匠이 땔감을 마련할 때에는 김안국의 경우처럼 건축주가 瓦匠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에 산입되었던 것이다. 땔감의 양은 주로 번조할 기와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비율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1576년(선조 9) 유희춘의 집 객청 공사 때, 기와 3積, 즉 3천 장을 구워내던 가마 1기당 대략 23株의 나무를 벌목하였다고 한다¹⁶⁵⁾. 이에 따르면, 기와 1천 장[1積=訥] 당 7~8株의 나무가 소요된 셈이다. 땔감은 잡목 사용이 원칙이지만 官窯에서조차 이를 어기고 소나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¹⁶⁶⁾ 소나무가 효율성이 높았던 모양이고, 엄벌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 私窯에서는 소나무가 보편적으로 애용되었다¹⁶⁷⁾.

반죽해 이긴 흙을 기와 형태로 만들어 건조시킨 뒤에는 이를 가마에 넣게 되는데, 이후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 기와를 번조하고 불을 끄는 데까지 1827년(순조 27) 선산 거주 노상추家 瓦匠의 경우 약 3일이 소요되었다¹⁶⁸⁾. 가마 1기당 번조한 기와 수량에 대해서는, 16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의 유희춘家 객청 공사의 경우 瓦匠 徐漢弼이 3,030장(『미암일기초』 병자년 3월 3일), 3,138장(同 3월 26일), 3,134장(同 4월 4일), 3,310장(同 4월 13일), 2,890장(同 3월 13일) 등을 꺼낸 것으로 나타나, 평균 3누리[訥], 즉 3천 장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1827년(순조 27) 경상도 선산 노상추가의 공사에서는 瓦匠이 가마 1기에서 암기와 1,200장, 수키와 7백여 장 등 모두 1천9백여 장을 꺼내고 있어¹⁶⁹⁾ 16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瓦匠 서한필에 비하면 적은 편이나, 단 1회 기록이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운 면이 있다.

瓦匠의 역할은 가마에서 꺼낸 기와를 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일까지였다. 공사 현장에서 기와를 지붕 위

164) 1575년(선조 8) 10월부터 1576년(선조 9) 7월까지 진행된 유희춘의 客廳 공사는 그가 많은 청요직과 이조참판을 역임한 후 처향인 潭陽에 낙향해 있을 때 진행되었다. 자연히 건축주 유희춘의 지위에 걸맞게 재목과 철물, 짚, 삼베(기와 틀 제작 사용) 등 각종 자재와 땔감, 미곡, 어물, 소금, 돛자리, 누룩 등 실로 다양한 용도의 물품에 이르기까지, 전라감사, 담양부사, 창평현감, 광주목사, 水使, 진주판관 등 많은 지방관의 지원과, 친인척 또는 문인들로 보이는 지인들의 재목, 음식류, 운반용 소 제공 등 거의 모든 부면에서 扶助가 이루어졌다(이호열, 1992, 12,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1 n.2, 한국건축역사학회, 18~30쪽). 따라서 그의 사례를 양반사대부가의 그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으나,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고위 양반관료를 지낸 건축주가 공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렸는지 보여 주는 귀한 자료이다. 이호열의 앞 논문은 이러한 지원 내역을 포함하여 공사의 성격과 진행 경과, 특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65) 『미암일기초』 병자년 3월 22일 「… 得瓦窯土木二十三株于宋海完之山 可烘一釜造三積云」

166)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甲申 「戶曹判書李之剛啓曹所掌民間除弊條件: 一, 松木, 造家, 造船所用最緊, 曾立禁令, 司宰監松炬, 代以柎木, 橡木, 瓦窯燒木, 皆用雜木. 今不遵成憲, 皆用松木, 自今憲府嚴加考察, 如前違禁者, 以教旨不從論. … 命依啓施行。」

167) 『세조실록』 권41, 세조 13년 1월 辛未 「… 南山之松, 自定都以後, 培養七十餘年, 無慮百萬餘株. 初則街童巷婦, 竊負枯枝枯葉而爨之; 中則因造大倉, 稱枯株而伐之; 終則近山之人, 無問貴賤, 白晝成群, 馱載生株, 或有造家者焉. 非徒造家, 車載燔瓦之聲, 流聞國中。」

168)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7월大 19일 壬戌 「嗚…瓦工則十七日藏瓦于窟中, 起火二日云. …; 同 20일 癸亥 「陰而晚雨終日. 食後下送人牛, 先達亦下去, 而始雨終日不止, 念念是夜, 瓦工止火.」 이후 연일 비가 와서 기와를 꺼내지 못하다가 비가 개기를 기다린 후 가마를 열었다(同 26일 己巳 「終日微嗚. 朝往見燔瓦, 昨暮開窟, 瓦堇成熟多幸.」).

169) 『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7월大 27일 庚午 「微嗚, 午後快嗚. 是晚始出計, 堇至可用, 女瓦一千二百丈, 夫瓦七百〇張云.」

로 올려 지붕을 덮는 일과 그에 따른 흙작업까지 일체의 기와 덮는 공정은 瓦匠이 아니라 蓋匠(蓋瓦匠)이 담당할 몫이었기 때문이다¹⁷⁰⁾. 건축주는 번와를 끝낸 瓦匠에게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유희춘이 1568년(선조 1) 사간원 司諫 재직시 행랑을 지으면서 瓦匠에게 ‘手功’으로 기와 1積, 즉 1천 장 당 三四升木綿 4필씩 지급한 것과¹⁷¹⁾, 객청 공사에서 瓦匠 서한필 등 6명에게 ‘報施’로 五升木 30필과 양곡 및 콩을 일부 지급한 것이 참고된다¹⁷²⁾. 행랑 조성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20적을 번와한 객청의 경우 瓦匠 서한필 등에게 80필을 지급해야 하는데, 서한필 등이 받은 것은 모두 5승목 30필과 양곡 및 콩 약간에 그쳐서 건축주의 횡포로¹⁷³⁾ 비칠 수도 있다. 다만 두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수공으로 지급된 3,4승목과 5승목의 품질 차이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땀감이나 잡역 인력 조달, 담니우 사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다양한 생산 요소의 조달 내역이 상세히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희춘 객청 공사 때의 경우, 기와 총량 20적의 번조에 소요되었을 무려 140~160株의 땀감용 목재와, 기와재료흙의 채굴과 운반, 흙이기기 등 기와 제작 공정에 드는 잡역 인력과 운반용 牛馬와 수레 등이 대부분 官과 지인들의 지원 및 부조로 충당·동원되었던 부분은 瓦匠에 대한 보수 산정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추가로 확보되고, 그 번와를 위한 제반 물질 자료 및 인력의 조달과정이 면밀히 분석될 때, 瓦匠 보수체계의 일반적 실상에 좀더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¹⁷⁴⁾

170) 기와 번조하는 瓦匠과 기와로 지붕을 덮는 蓋匠(蓋瓦匠)은 官 役事[『광해군일기』 [정초본] 권121, 광해군일기 9년 11월 戊寅; 『일성록』 정조 14년 10월 6일(癸丑); 同 20년 9월 11일(癸丑)]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엄연히 구분되었다. 유희춘은 瓦匠 서한필이 구운 기와를 羅州 蓋匠 崔莫山을 불러 지붕에 덮게 하였다(『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11일 「奴率羅州蓋匠崔莫山 夕來到」; 同 4월 12일 「戶內人等二十名 助蓋瓦之役 或掘而泥之 或負瓦與土 而升于宇上 崔莫山以蓋匠之良 主大廳 官奴豆樂 蓋樓 梗及庫梗 …」). 유희춘은 奴 點孫을 시켜, 일 마치고 나주로 돌아가는 최막산을 말에 태워 호송케 하여 瓦匠에 비해 蓋匠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同 4월 22일, 23일). 한편 蓋匠에 대해, 官 役事를 기록한 의궤류에서는 17~18세기까지 ‘蓋匠’을, 이후에는 ‘蓋瓦匠’이란 명칭을 많이 썼다(이연노, 2009,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 -영건의궤 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8호, 한국건축학회, 202쪽).

171) 『미암일기초』 戊辰年 5월 4일 「…瓦匠手功 一千丈爲一積 一積當給三四升木綿四匹 十積則手功四十四匹…」

172) 『미암일기초』 병자년 4월 25일 「…燔瓦畢 會瓦工六人 饗酒肉 而給報施 通計予五升木三十四 并糧太」

173) 이호열, 앞의 논문, 33쪽.

174) 다만, 유희춘의 사례에 한정해 볼 때, 瓦匠 보수가 기본적으로 작업 기간이나 瓦匠 조직의 인원수가 아닌 번조 기와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6명으로 구성된 와장모작패를 도급임금제로 고용”한 것이라는 지적(홍희유, 1991, 『조선수공업사』 2, 공업종합출판사, 136쪽)은 타당한 일면이 없지 않다. 한편 와장 집단의 내부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 발굴이 긴요하다. 기존의 각지 출토 명문와편들에 보이는 ‘大匠’이나 ‘伯士[伯士]’, 개인일기에서 확인되는 ‘都瓦工’(『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윤5월大 23일 丁卯), ‘都瓦匠’(『한국사료총서』 49집, <盧尙樞日記> 4, 순조 27년 丁亥日記 10월小 초8일 庚辰 「都瓦匠高卜喆, 率其黨告歸」) 등은 모두 조직 수장에 대한 관용적인 직함이나 호칭일 뿐, 내부 위계질서와 인력 배치, 인원 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출토 기와의 同范 관계와 제작 도구, 제작 기술 등을 분석하여 瓦匠 조직의 형태 추출을 시도한 외국의 사례(田福 涼, 2003, 「造瓦組織 復元을 위한 一試論」, 『문화사학』 20, 한국문화사학회)도 시사적이지만, 좀더 상세한 사정을 전하는 기록자료의 신규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의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가름하겠다.

고려시대에 중앙의 관수용 기와는 개경 인근의 관요인 六窯와 지방의 瓦所에서 생산한 기와로 충당하였다. 지방의 官 역사에 필요한 기와는 공사 현장에 瓦匠을 부역 동원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조달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기와를 만들어 썼다. 14세기에 들어서서는 瓦匠을 품삯을 주고 고용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불교 사원 중에는 기와 제조 기술을 가진 瓦匠僧이 기와를 구워 자체 조달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런 瓦匠僧 가운데 일부는 연안 해로를 활용하면서 인접한 複數 군현 범위의 광역 수요를 대상으로 기와를 생산·공급하는 이들이 있었다.

수도 개경은 瓦匠의 私窯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고, 개경 瓦匠 중에는 멀리 전라도 지역까지 초빙되어 가서 기와를 구운 경우도 있었다. 고려말인 14세기에는 중앙 관서에서 瓦匠의 私窯 기와를 구매하여 공사에 쓰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지방의 내륙 지역에서도 일반 민간 瓦匠 중에 자신의 근거지와 인근 複數 군현을 포함한 범위에서, 사찰, 주거지, 성곽 등의 공사에서 기와를 굽거나, 주문에 따라 기와를 만들어 공급하는 등 광역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중앙의 관수용 기와는 瓦署에서 생산하였으나, 부족할 경우 민간 瓦匠들을 부역 동원하기도 하였다. 과중한 역 부담과 낮은 처우, 代立價를 노린 瓦署 노비들의 압박 등은 瓦署 瓦匠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질곡이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한양의 평민층에게 저렴한 기와를 공급할 목적으로 別瓦窯를 운영하였으나, 평민층의 기와 구매가 부진하고, 연료목 운송에 관련한 민폐와 양반층 대상 불법 판매 등이 지적되면서 폐지와 복설을 반복하였고, 마침내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각종 官 役事에서는 瓦匠을 부역 징발하여 현장에서 기와를 구워 공급하게 했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 이들 瓦匠에게 식사 외에 일종의 工賃까지 지급하였다. 공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瓦匠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를 공식 항의하였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가 정당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17세기 이래 소속 瓦匠의 부족으로 瓦署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瓦匠의 私窯 기와를 官이 구입해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18세기에는 정부가 瓦匠들에게 기와값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으로 기와를 구워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官에서 私窯 기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지방의 경우 16세기 후반부터 보인다.

민간 瓦匠의 私窯 활동은 완제품 기와의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서 기와를 구워 공급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건축주의 초빙을 받은 瓦匠은 지역 사회에서 정평이 있는 瓦匠들이었는데,

대부분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겸하였다. 건축주와 비용 및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기와를 구워 공사에 공급하였다. 19세기 초반 경상도 선산에서 건축주가 瓦匠에게 답니우를 구입해 준 사례로 볼 때, 향촌 瓦匠들이 답니우를 사용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만은 않았을 것이 짐작된다. 가마에 불을 지피고 기와를 번조하는 데에는 19세기 초반 경상도 선산의 경우 최소 만 3일이 소요되었다. 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의 수량은, 16세기 후반 전라도 담양 와장의 경우, 가마 1기당 평균 3천 장을 조금 상회하였다. 가장 널리 사용된 땔감은 소나무였는데, 비용 부담이 매우 컸다. 瓦匠에 대한 보수는, 땔감, 잡역부, 답니우 등 고비용 생산 요소들의 투여 방식과 얽혀 있는 것이어서, 추가 사례가 확보될 때 표준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의 윤곽과 그 추이에 관해, 기와의 수요처와 생산 주체로서의 瓦匠을 축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전근대 시기 기록의 특성상 국가와 민간의 기와 생산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상에 다가가기는 어려웠다. 자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조선시대에도 위에 인용한 일부 일기자료조차 주된 관심사에서 비껴나 있던 기와 생산과 瓦匠에 관한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축적돼 온 기와 생산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과 앞으로 이뤄져야 할 북한 지역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부분적으로 瓦所와 관련해서는, 서해 침몰선박 사례들에서 청자와 달리 기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 瓦所 자체의 보편적 실재 여부나 분포 양상, 개경으로의 운송과 관련한 입지 등의 문제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주목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고려나 조선을 막론하고 官 役事에서 瓦匠에 대한 부역 징발과 품삯 고용, 私窯 기와의 구매, 부역 징발된 瓦匠들에 대한 공임 지급 등에 대해, 일시적·예외적 성격의 측면과 사회 발전의 일정 징표로서의 측면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의미부여가 필요하겠다. 또 국가의 대민 지배 방식을 내포한 관수용 기와의 문제에 비해, 민간 수요에 부응하는 私窯의 생산과 그 운영 주체 문제는, 기와의 유통 실태와 함께, 당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유용한 통로의 하나라 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일기류와 같은 자료성 높은 문헌기록의 추가 발굴과 함께, 가마와 건물지 등 관련 유적 및 출토 기와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을 역사학적 맥락에서 충분히 소화·활용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점에서 본고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姜萬吉, 1967, 「別瓦窯考-朝鮮時代の製瓦業發展」, 『史學志』 1, 檀國大學校 史學會.
- 姜萬吉, 1984, 「民需用製瓦場, 別瓦窯」,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 京畿道博物館·安城市, 2002, 『奉業寺』.
-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용어집』.
- 고응규, 2007, 「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 김동철, 1985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9, 부산대학교 사학회.
- 김성진, 2020, 「경남지역 고려 와요(瓦窯)의 성립과 변천」, 『한국중세고고학』 7, 韓國中世考古學會.
- 목포대학교 박물관, 신안군, 2005, 『신안 신용리 건물지』.
- 목포대학교 박물관, 2006, 『진도 용장산성』.
-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장흥 상방촌A유적II -건물지- 탐진다목적댐 수물지역 문화유적IX』.
-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8, 『장흥 신월리 건물지-탐진다목적댐 수물지역 문화유적X』.
- 文化財研究所, 1992, 『莞島法華寺址』.
- 朴敬源, 1981, 「高麗鑄金匠考-韓仲紱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 韓國美術史學會.
- 朴龍雲, 1996,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 박은숙, 2008, 「개항 후 分院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 -荷齋日記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42, 韓國史研究會.
- 박종진, 2000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 박진훈, 2021, 「고려시대 개경민의 주거 문제와 생활 공간」, 『서울학연구』 83, 서울학연구소.
- 서성호, 1997,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서성호, 1999, 「高麗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서성호, 2017, 「고려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의 문화·경제적 면모 -향리층을 중심으로」, 『고려 역사상의 탐색 -국가체계에서 가족과 삶의 문제까지』, 집문당.
- 손영중·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1)』, 공업출판사.
- 靈巖郡·順天大學校博物館, 2005, 『天皇寺I -1차발굴조사보고서』.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1, 『益山 彌勒山城 東門址 周邊發掘調查報告書』.
- 劉敎聖, 1965,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尹龍赫, 1991, 「몽고의 침략에 대한 고려 지방민의 항전-1254년 鎭州(鎭川)民과 忠州 多仁鐵所民의 경우」, 『국사관논총』 24, 국사편찬위원회.
- 李相宣, 1991, 「高麗 寺院의 商行爲 考」, 『誠信史學』 9, 誠信女子大學校 史學會.
- 이연노, 2009, 「조선후기 장인의 담당 공종에 관한 연구 -영건의례 기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8호, 한국건축학회.
- 이재명, 2012, 「거창 월평리유적 기와생산시설과 출토 평기와에 대한 검토」, 『경남연구』 6, 경남발전연구원.
-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7, 고려사학회.
- 이호열, 1992, 12,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中心으로」, 『건축역사연구』 v.1 n.2, 한국건축역사학회.
- 장경희, 2007,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王陵 丁字閣과 石儀物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5, 한국역사민속학회.
- 鄭治泳, 2006, 「高麗 朝鮮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2, 서울경기고고학회.
- 최연식, 2010, 「海南 大興寺所藏 ‘塔山寺銅鐘’ 銘文의 재검토」, 『목간과 문자』 6, 한국목간학회.
- 崔永好, 2000,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 95, 국사편찬위원회.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2002, 『永同 稽山里遺蹟』.
- 忠北大學校中原文化研究所, 1997, 『永同邑城 地表調査 報告書』.
- 파주시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파주 헤음원지-6,7차 발굴조사보고서』.
- 한국대학교박물관협회 · 연세대학교 박물관, 1985, 『韓國의 銘文: 연세대학교 창립100주년기념 한국대학교박물관협회 연합전시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 許興植, 1992,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 홍영의,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 홍영의, 2012, 「개성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요장(窯場)」, 『고려궁성 남북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 홍영의, 2015,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 41, 한국중세사학회.
- 홍영의, 2018, 「경기지역의 고려시대 명문기와 현황과 과제」, 『한국중세고고학』 4, 한국중세고고학회.
- 홍영의, 2020, 「고려시대 토목공사에서의 기와의 생산과 수급 -瓦所의 해체와 생산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고고학』 7, 한국중세고고학회.
- 홍희유, 1979,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9, 지양사).
- 홍희유, 1991 『조선수공업사』 2, 공업종합출판사.

ABSTRACT

The production and artisans of roof tile in Goryeo and Joseon periods

Suh Sung-ho

In Goryeo Dynasty, roof tiles for the central government's use were procured from Yugyo (六窯), government-run kilns near Gaegyeong, the capital, and from Waso(瓦所), the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s producing roof tiles. Roof tiles for local government's use were produced at the construction site by artisans corvee requisitioned by local government. If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corvee requisitioned artisans. In the 14th century, there appeared some new cases in which the roof tile artisans were hired by paying wage. Buddhist temples of Goryeo Dynasty often had monk artisans making roof tiles for their own temples. Some of those monk artisans conducted wide-area activity for nearby counties making use of the coastal sea route. Gaegyeong, the capital, was the place where private roof tile artisans were most active. Among the artisans of Gaegyeong, there were those, although rare, who were invited to a remote area such as Jangheung, Jeolla-do Province, to bake roof tiles. In the 14th century, some cases of purchasing roof tiles produced by private artisa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ppeared. Among the local private artisans, there were those who baked roof tiles at the construction sites of temples, residences, and fortresses, or produced roof tiles in response to orders, taking the several neighboring counties as their scope of activity.

In Joseon Dynasty, the roof tiles for the central government's use were produced by the artisans of Waseo(瓦署), the office in charge of procuring roof tiles. The heavy burden of labor and low treatment acted as a centrifugal force for the artisans to escape from Waseo(瓦署).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perated the Byeorwayo(別瓦窯) to supply cheap roof tiles to the commoners in the capital Hanyang. However, due to sluggish purchasing by the

commoners, civil complaints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of firewood, and frequent illegal sales to Yangban, the noble class, Byeorwayo(別瓦窯) repeated the abolition and restoration. It seems that Byeorwayo(別瓦窯) was eventually abolished with the Imjin War.

In various government-led construction projects, roof tile artisans were corvee requisitioned and baked roof tiles at the construction sit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se artisans were provided not only meals but also a kind of wage. Those artisans who were not paid their fair wages protested proudly to the government, and if the protest was justified, the government took corrective action.

Since the 17th century, the government purchase of the roof tiles produced by the private artisans increased, because Waseo(瓦署) could not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lack of artisans belonging to it. Furthermore, in the 18th century, the government paid private artisans the price of roof tiles in advance, and made them to bake and deliver roof tiles. In the case of local society, this way of procuring roof tiles for government's use by purchasing roof tiles made by private artisans has been seen since the late 16th century.

The activities of private artisans were also in the form of baking roof tiles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artisans invited by the client were those with a good reputation in the local community. These artisans, most of whom usually farmed for a living, discussed costs and schedules with their clients and then baked the roof tiles on or near the construction site. There was a case at Seonsan, Gyeongsang-do Province, in the early 19th century, where the client purchased a dahmniwoo(踏泥牛), meaning 'a clay kneading cow', for the roof tile artisan, suggesting that the use of clay kneading cow was not uncommon in the process of kneading material soil of private artisans in rural area at that time.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at Seonsan, Gyeongsang-do Province,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artisan set a fire in a kiln and baked the roof tiles for three days. In the case of an artisan at Damyang, Jeolla-do Province,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average number of roof tiles fully baked in and taken out of kiln was slightly over 3,000 sheets per kiln.

The most widely used firewood was pine, which was very costly. The remuneration paid by the client to the roof tile artisan is a problem that is intertwined with the way expensive production factors such as firewood, handymen, clay kneading cow are provided. Therefore, in order to approach the standard value,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cases.

Keywords : Yugyo(六窯), Waso(瓦所), roof tile artisan, Waseo(瓦署), Byeorwayo(別瓦窯), wage, dahmniwoo(踏泥牛)